

Urban Design Plans for Jeonju 2016

전주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Urban Design Guideline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Part I. 공공건축물

1. 개요	100
2. 일반 공공건축물	101
3. [특화] 전통건축물	108
4. [특화] 산업단지건축물	111

Part II. 공공공간

1. 개요	116
2. 보행공간	117
3. 자전거도로	122
4. 공원 및 광장	125
5. [특화] 특화거리 및 공개공지	129
6. [특화] 특화공원 및 광장	132

Part III. 공공시설물

1. 개요	138
2. 공공시설물 공통	139
3. 시설물별 세부	143

Part IV. 공공시각매체

1. 개요	164
2. 일반 시각매체	165
3. 영상정보 시각매체	169

Part V. 옥외광고물

1. 개요	174
2. 민간건축물	175
3. [경관지구] 전통건축물	181

Part VI. 가이드라인 구성 및 운영

1.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 및 내용	184
2.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방향	186

Part VII. 보행공간 디자인 원칙 [부록]

1. 개요	190
2. 보도	192
3. 자전거 · 보행자 겸용 도로	198

Part VIII. 색채 가이드라인 [부록]

1. 색채의 이해	200
2. 전주시 도시디자인 색채 가이드라인	202

I. 공공건축물

1. 개요
2. 일반 공공건축물
3. [특화] 전통건축물
4. [특화] 산업단지건축물

Part I. 공공건축물

1. 개요

1.1
정의

-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발주,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 및 전주시의 문화 및 커뮤니티활동, 공공 의료기관과 전통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1.2
적용대상

- 전주시 공공건축물의 대상은 아래 표와 같이 6종으로 분류된다.

전통건축물	한옥마을, 풍남문, 경기전, 객사, 전동성당 전통건축, 사찰 등
행정 및 공공기반 건축물	전북도청, 전주시청 공공청사, 동주민센터,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전화국, 관광안내소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관련 건축물	전주월드컵경기장, 컨벤션센터, 국립전주박물관 예술회관, 구민회관 전시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교육 및 연구관련 건축물	전주전통문화센터, 전주시립도서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공도서관
의료 및 복지관련 건축물	전주병원, 전주시보건소 보육시설, 노인 복지시설, 여성 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병원, 보건소 등
기타 건축물	자원회수시설, 공중화장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

표 1-1 공공건축물 적용대상

1.3
가이드라인 체계

- 본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은 전주시의 일반 공공건축물과 특화대상인 전통건축물 및 산업단지건축물에 대한 규정항목을 다룬다.
-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의 규정항목은 계획 및 입면, 공간연계 및 외부공간, 부속 시설물, 색채, 야간조명의 다섯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지침을 제공한다.

기본방향	가이드라인 분류	규정항목
품격있고 안정적인 계획 추구 주변환경과의 조화 추구 개방감 확보와 공간연계 증진 시민의 문화적 감성 이미지 조성 이용을 위한 효율적 정보 제공	일반 공공건축물 [특화] 전통건축물 [특화] 산업단지건축물	계획 및 입면 공간연계 및 외부공간 부속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표 1-2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체계

Part I . 공공건축물

2. 일반 공공건축물

2.1 계획 및 입면

01 과도하지 않으면서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독창적 형태를 권장한다.

- 지역의 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미려하고 안정적인 건축의 형태를 권장한다.
- 고품격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단조롭고 획일적 입면을 지양한다.
- 안내소, 공중화장실, 기타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단순하고 정연한 형태로 계획한다.



02 실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입체적인 이미지를 제시해야 한다.

- 건축물 자체만이 아닌 주변 경관과의 관계 및 조화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실제 주변 경관의 관계 및 조화를 판단할 수 있는 근경, 중경, 원경의 입체적인 이미지를 제시해야 한다.
- 현상설계에서 제시된 안은 초기의 계획 의도가 후속 설계에도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 경관심의 및 자문에서 제안되어 확정된 계획 및 입면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 단, 관련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 · 합의할 수 있다.



03 형태, 색채, 재료의 계획시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 형태, 색채 및 재료의 변화는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과다한 분절로 인한 산만한 건축입면을 지양한다.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와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고유의 특성과 균형감이 있는 색채계획(내외장재, 도색)을 제시해야 한다.



04 옥외공간 및 실내공간의 공공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건축 외부공간은 인접 보행동선 및 녹지축과 연계하여 통합적 공간으로 계획한다.
- 로비, 주차장, 화장실 등 공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에 대한 색채계획, 사인시설계획 등은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공공건축물의 공용부 적정면적, 동선확보의 타당성, 기능과의 연계성은 공공 활용성을 충족해야 한다.
-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관점에서 이용자 접근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장애인이용편의 관련 설계기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기준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계획 및 설계한다.



05 건축물의 특정 영역에 대한 디자인 특화시 전체와의 통일감을 고려해야 한다.

- 건축물 상층부 및 옥탑부는 디자인 특화를 통해 우수한 건축환경을 조성토록 권장한다.
- 에너지관련 시설(태양광) 및 기타 시설 등을 설계시 통일감 있는 입면을 고려해야 한다.
-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사전에 계획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공공건축물의 야간경관 연출시 적정조도의 야간조명과 자극적이지 않은 연출을 권장해야 한다.



2.2 공간연계 및 외부공간

01 충분한 휴게공간 제공으로 접근성을 강화한다.

- 공공건축과 연계하여 보행동선이 있는 경우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한다.
- 공공건축물의 전면공지는 보행가로를 포함한 횡경사가 완만하도록 계획한다.
- 공공청사 등 공공기관의 공공공간은 시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02 시각적인 개방성을 권장하고, 심리적 접근성을 강화한다.

- 건물의 정문에서 파사드에 이르는 시각적 조망축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 개방성을 중심으로 공간을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CCTV설치 등을 통한 보안을 모색한다.

03 공간 상황에 따른 적절한 공공공간의 형태와 규모를 구축한다.

- 공개공지를 가지는 경우, 녹지 및 쉼터를 구성한다.
- 공개공지는 보행의 단절이 없도록 연속성을 배려한다.
- 경찰서, 소방서처럼 대로와 밀착된 경우, 자동차에서 건물로 쉽게 접근이 되므로 입면을 중시한다.
- 이면도로에 밀착하여 공개공지가 없는 경우, 자전거 및 도보 접근 중심의 계획을 수립한다.
- 의료시설 출입부분은 반드시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여 보행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



2.3 부속시설물

01 안전을 고려한 부속시설물을 배치한다.

- 무장애 디자인의 기준을 가급적 반영하여, 건물 내 단차 제거, 미끄럼 방지, 비상벨 설치 등의 안전장치를 확보한다.
- 부속시설의 가설형 건물 증축은 지양한다.

02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고려한 통합적 디자인을 권장한다.

-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를 배려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한 핸드레일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시설물은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의 연속적 배치를 권장한다.
- 따뜻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적인 재료보다는 자연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03 차폐나 경계시설의 설치시 통일성과 조화성을 우선한다.

- 건축물의 측부나 후면부에 쓰레기 관련시설 설치 시 차폐계획을 수립한다.
- 차폐시에는 각 건축물의 외관과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고, 식재 등 조경시설을 함께 계획하도록 한다.
- 친환경 에너지 시설물, 재료의 재활용성을 이용한 그린디자인 개념을 도입한다.
-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 기능이 중요한 지역은 담장 또는 펜스 설치를 허용한다.
- 가로 소음 차단 옹벽과 방음벽은 최대한 투명성을 고려한다.



04 방문자가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인시스템을 구축한다.

- 건물명 간판과 현판을 제외한 현수막과 기타 옥외광고물은 건물 파사드 부착을 지양한다.
- 1층 출입구 및 로비에 층별 안내도 및 배치도(평면도)를 이용자가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계단, 엘리베이터, 각 층 출입구에는 층 표시와 상주 부서(기관)명이 인식되도록 한다.
- 특정 개실 및 부서 등으로의 진입 방향 표시를 명확히 한다.
- 다국어 정보표기를 병기하고 픽토그램의 사용을 확대한다.
- 공공건축물 주요 외부사인에 대해서는 조명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05 공공건축물의 건물명 표기는 전체 형태 및 컨셉과 조화되어야 한다.

- 공공건축물 건물명 표기는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디자인관련 부서와 협의하에 결정한다.
- 건물명의 표기는 건축 소재와 유사 배색을 권장한다.
- 가급적 현판은 2개 이하로 설치한다.



06 공사가림막(가설울타리)은 내구성이 높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 재료의 변색, 변형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07 공사가림막은 위압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패널을 디자인한다.

- 상업적 목적의 홍보내용은 지양하고, 공공개념이나 예술적 개념의 내용을 중심으로 패널을 디자인한다.



2.4 야간조명

01 공공건축물의 야간활동 지원 및 안전성을 고려한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 사람들의 휴식 및 활동을 저해하는 조명계획은 지양한다.
- 광공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광원노출은 지양한다.
- 센서를 이용한 소비전력 완화 시설물이나 조명 등을 도입하도록 권장한다.



02 공공건축물과의 일체성과 통일성을 권장한다.

- 과도한 색상 및 동적인 조명 연출은 지양하고, 은은한 조명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연출한다.
- 건축 벽면부 및 외부공간 식재부에 간접 조명방식을 통해 시설물 및 공간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은은한 분위기의 야간경관을 연출한다.
- 야간 활동성이 적은 공공건축물은 직접조명은 지양하며, 간접조명을 통해 건축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빛공해를 최소화 한다.
- 점 · 선의 연출을 위한 LED 조명기구들은 건축물과 일체되도록 벽면 매입방식을 권장한다.
- 특화조명의 경우,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건축적 예술미가 잘 나타나도록 하고 다양한 색상의 사용보다 단일 색상으로 상징적 의미를 강화한다.



2.5 색채

01 과도한 원색 및 고채도의 색사용은 지양한다.

- 고채도의 색상은 강조색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주조색, 보조색 사용 시 환경색채와 저채도 색의 배색을 통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특히 건축물, 도시구조물과 같이 면적이 큰 경우는 저채도 중심의 색채사용으로 시각적인 통일성을 유지한다.
- 권위적 이미지의 탈피를 위해 부담 없고 편안한 색채 및 배색을 적용한다.
- 안내시설, 지표시설 등 시각적 주목성이 요구되는 시설에는 원색의 사용을 권장하나 시각정보를 제외한 지주 및 구조물 등은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한다.



02 자연친화적인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한다.

- 건축물 외벽의 색은 재료 고유의 색을 사용하며, 특히 시각적 노출이 많은 부분은 자연적 재료를 사용한다.
- 인접 환경의 자연색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배색한다.
 - ※ 단, 과도한 색채 통일성으로 인한 개별 건축물의 획일화는 지양한다.



Part I . 공공건축물

3. [특화] 전통건축물

3.1 계획 및 입면

01 전통건축물의 고유특성이 드러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전통건축물을 이용한 공공건축물 설계시 처마의 깊이는 가급적 깊도록 설계한다.
- 모조 및 유사기와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기와의 계획 및 교체시 암, 수로 이루어진 전통형식의 기와를 사용하도록 하며, 일식 기와는 배제한다.



02 경관지구의 전통건축물은 건축입면을 최대한 노출해야 한다.

- 전통건축물의 계획 및 입면 관리시, 건축입면의 노출을 방해하는 요소는 금지한다.
 - ※ 단, 관련부서와 협의 · 조정된 요소에 대해서는 허용한다.
- 전통건축물은 위압적인 담장 높이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

3.2 공간연계 및 외부공간

01 전통건축물의 외부공간 조경은 전통방식의 연출을 고려한다.

- 전통건축물의 외부공간 조경에는 전통건축과 어울리는 소재와 소품을 활용한 연출을 권장한다.



3.3 부속시설물

01 경관지구의 전통건축물 부속시설물은 전통건축물과 조화되는 형태,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 경관지구의 전통건축물과 조화되도록 최소화된 형태의 시설물 설치를 권장한다.
- 건축물 보호를 위한 펜스 설치시, 반사가 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한다.
 - ※ 단, 반사소재의 불가피한 사용시에는 반사를 줄이기 위한 표면처리를 한다.
- 경관지구의 전통건축물에 부착된 물품판매대 등 시설물의 형태와 색채는 건축물과 조화되어야 한다.
- 경관지구의 전통건축물 부속시설물은 모조 플라스틱 등의 소재사용을 지양한다.



02 경관지구의 전통건축물 부속시설물은 입면을 최대한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

- 경관지구의 전통건축물에 현수막 부착은 금지한다.
 - ※ 단, 불가피한 경우 관련부서의 협의·조정을 거쳐 그 범위를 정한다.
- 경관지구에서는 어닝 설치시 반드시 건축물과 유사한 색채로 프레임과 천 색채를 처리하되, 비가 오는 날에만 사용을 허용한다.
- 전통건축물 관리를 위한 CCTV, 전기분전반 등 관리시설은 최대한 눈에 띄이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3.4 야간경관

01 직접조명보다 간접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 가로등이나 담장 등은 간접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 건축물의 형태, 구조미, 조형미를 강조할 수 있는 간접조명방식을 적용한다.
- 야간조명 계획시 원색적인 조명색채를 지양하고, 부드러운 조명을 적용한다.
- 조명시설물의 직접적 노출을 최소화 하며, 부득이한 노출시 건축물과 조화로운 색채 및 형태를 적용한다.



3.5 색채

01 인접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주변을 고려한 환경색채를 사용한다.

- 자연경관과 인접한 경우, 입면에는 반드시 자연색채와 조화되는 부드러운 저채도의 환경색채를 사용한다.
- 시각적 편안함을 위해 건축물에 설치된 인공시설물은 저채도의 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Part I . 공공건축물

4. [특화] 산업단지건축물

4.1 계획 및 입면

01 산업단지건축물은 환경친화적 외관을 권장해야 한다.

- 위화감과 삭막한 이미지의 건축물 형태를 지양한다.
- 단지 전체의 조화를 고려한 각 건축물 디자인 계획을 수립한다.



02 산업단지건축물은 시각적 자극을 줄이도록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계획을 해야 한다.

- 산업단지건축물은 채도가 높은 자극적 색채의 전체 도색을 금지한다.
 - ※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조정을 통해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 도시 경계부에 위치하여 시각적으로 노출이 되는 창고시설물은 다양한 색채 및 패턴, 식재 등을 사용하여 입면을 분절한다.



4.2 공간연계 및 외부공간

01 산업단지건축물은 환경친화적이며 이용자 배려의 외부공간을 권장해야 한다.

- 산업단지건축물 출입구로부터 건축물 사이 주차면이나 넓은 공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소규모 쉼터, 작은 녹지공간 등 환경친화적 외부공간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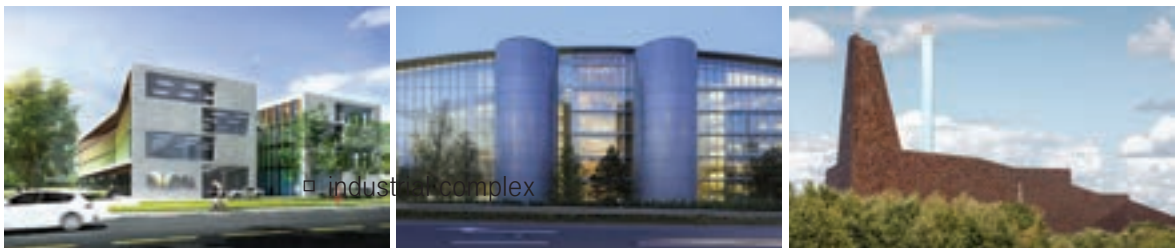
- 작은 휴식공간 설치 등 산업단지 내 이용자를 배려하는 외부공간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 산업단지별로 권역 단위의 소규모 휴식공간 네트워크 구축 등 이용성 강화를 권장한다.
- 산업단지건축물의 경계 차폐시설은 가급적 생태적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4.3 부속시설물

01 산업단지건축물 부속시설물은 건축물과 조화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 산업단지건축물 부속시설물의 형태, 색채는 건축물과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02 산업단지건축물 시각매체는 안전을 위해 인지성이 우수해야 한다.

- 산업단지건축물의 각종 시설에 안전표식을 명확히 하고, 주의를 위한 선명한 색채와 식별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시각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4.4 야간경관

01 산업환경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완화하는 조명을 권장한다.

- 상징굴뚝, 시설 일부의 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해 온화한 연출을 권장한다.



4.5 색채

01 공장형 건축물의 획일적인 색채 사용을 지양한다.

- 고채도 색상을 통한 강조를 지양하고, 저채도 색의 배색을 통해 건축물을 부각시킨다.
- 저채도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사용을 통해 시각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 넓은 면적의 입면의 경우 패턴, 소재, 색채를 통한 입면 분절로 시각적 개방감을 유도한다.



분 류		체크리스트 항목	사업 부서	시행 부서	디자인 부서
공 공 건축물	계획 및 입면	1. 지역의 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미려하고 안정적인 건축계획이 되었는가?			
		2. 실제 주변경관의 관계 및 조화를 판단한 수 있는 근경, 중경, 원경의 입체적인 이미지를 제시하였는가?			
		3.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 색채 및 재료를 사용했는가?			
		4. 건축 옥외공간과 인접공간 연계 및 실내공간의 공공성 계획이 적절한가? (동선, 사인 등)			
		5. 건축물 상층부, 옥탑부, 에너지관련 시설 등이 전체와 통일감 있게 계획되었는가?			
	공간연계 및 외부공간	6. 접근성 강화에 필요한 충분한 휴게공간이 제공되었는가?			
		7. 건축물 주변은 개방적 공간으로 연계되었는가?			
		8. 공개공지 등 건축물과 외부공간 상황에 따른 적절한 규모와 형태의 공공공간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부속시설물	9. 안전과 무장애 디자인의 기준을 고려한 부속시설물이 배치되었는가?			
		10. 시설물은 대규모 단일 설치가 아닌 소규모의 연속적 배치를 고려하였는가?			
		11. 차폐시설물은 건축물 외관과의 조화, 생태성을 고려하였는가?			
		12. 방문자의 인지를 위한 사인시스템이 적절히 구축되었는가?			
		13. 건물명 표기는 적절한 위치에 유사배색 등 조화롭게 계획되었는가?			
		14. 공사가림막은 내구성과 친환경적 재료, 예술성을 고려하고 위압감이 없도록 디자인되었는가?			
	야간조명	15. 공공건축물의 야간활동에 필요한 조명계획이 수립되었는가?			
		16. 공공건축물과 일체감이 있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야간조명이 계획되었는가?			
		17. 특화조명의 경우, 다양한 색상이 아닌 단일색상으로 상징적 의미를 강화하였는가?			
	색 채	18. 건축물 고유의 특성과 균형감 있는 색채계획(내외장재, 도색)이 되었는가?			
		19. 건축물 외벽은 재료 고유의 색을 지향하였는가?			
	사전협의 여부	20.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와 구체적 협의를 거쳤는가?			
	미반영 점검항목 및 사유 기재				
	디자인 담당부서 협의내용 기재				

표 1-3 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

II. 공공공간

1. 개요
2. 보행공간
3. 자전거도로
4. 공원 및 광장
5. [특화] 특화거리 및 공개공지
6. [특화] 특화공원 및 광장

Part II. 공공공간

1. 개요

1.1 정의

-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옥외에 조성된 개방된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1.2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의 정의에 따른 전주시 공공공간의 대상은 아래 표와 같이 5종으로 분류된다.

보행공간	보도
자전거도로	보차혼용 자전거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공원 및 광장	근린공원, 소공원, 일반광장, 교통광장 등
특화거리 및 공개공지	특화거리, 기부체납 민간부지, 공개공지 등
특화공원 및 광장	특화공원, 수변공원, 어린이 관련 공원, 특화광장 등

표 2-1 공공공간 적용대상

1.3 가이드라인 체계

- 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은 전주시의 공공공간 중 보행공간과 자전거도로, 공원 및 광장에 대한 규정항목을 다루며, 특화대상인 특화거리 및 공개공지, 특화공원 및 광장 등 총 5개 분류에 대한 규정항목을 다룬다.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항목은 계획, 시설물, 야간조명의 세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지침을 제공한다.

기본방향	가이드라인 분류	규정항목
품격있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개방감 중심의 쾌적한 공공공간 권장 도시 전체의 녹지연계 강화 시민의 문화적 감성 이미지 조성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한 이미지 통합	보행공간 자전거도로 공원 및 광장 [특화] 특화거리 및 공개공지 [특화] 특화공원 및 광장	계획 시설물 야간조명

표 2-2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체계

Part II. 공공공간

2. 보행공간

2.1 계획

01 보도 폭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행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 보도의 일정 폭을 보행안전구역으로 계획하며 보행안전구역 내 보행기준선을 명확히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휠체어의 양방향 교행이 가능한 2m를 보행안전구역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 단, 보도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1.5m 이상을 권장한다.



02 보행가로의 평탄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일관된 가로환경을 구현한다.

- 노면의 요철을 최소화하고 평탄도를 유지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바닥 재질이 다를 경우에는 경계를 미려하게 시공하여 이용자의 연속성을 높인다.
- 안전한 보행을 저해하는 급격한 횡경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



03 보도의 쾌적성을 향상시키도록 녹지를 충분히 확보한다.

- 넓은 가로의 경우 이중, 다층 식재 및 중앙분리대 녹화를 조성하고, 좁은 가로의 경우 보행자의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녹지대를 최소화한다.
- 기존의 자연 식생과 조화되도록 식재하여 가로공간의 쾌적성을 향상시킨다.

- 녹지공간으로 조망경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접한 공공공간과의 연계를 충분히 계획하며, 충분한 보도 폭이 확보되면 녹지대를 설치하여 가로특화공간으로 명소화한다.



04 보도 폭 규모에 따라 공공시설물 설치의 종류와 방식을 달리한다.

- 보도 폭 2m 이하 일 때는 자전거도로, 식재 설치를 금지한다.
- 보도 폭 2m 이하 일 때는 쉼터의 전면과 배면을 바꾸어 설치할 수 있다.
- 보도 폭 4m 이상 일 때는 가급적 띠녹지를 구성하고, 띠녹지 내에 공공시설물을 통합 설치한다.
- 보도 폭 2m 이하 일 때는 보행안전구역의 양옆 혹은 한쪽에 선형블록을 대신하는 보행기준선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점형블록 없이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특히 유효보도 폭이 좁은 보도에서는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인들의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색채변화 및 현란한 패턴 적용을 엄격히 지양한다.



05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이 있는 곳은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도의 시종점부와 횡단보도 및 대중교통 승하차 지점과 같이 차량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은 차도와 보도의 경계부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횡단보도, 대중교통시설, 공중화장실, 안내센터 등이 보행안전구역과 인접하지 않은 경우 이를 연결하는 선형블록을 설치한다.
- 점자블록은 황색계열 및 미끄러움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의 사양 및 설치방법은 ‘교통약자이동 편의 시설 설치 및 관리매뉴얼’에 따른다.



06 기부체납에 의한 보도 확장, 공개공지 계획 등에 대해서는 허가시 관련 부서와 반드시 협의한다.

- 기부체납,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공개공지 등에 의한 공용보도와 민간부지 내 보도 연계 등 사항은 디자인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 후 계획하고 허가를 실시한다.



2.2 시설물

01 이용자 행태를 고려한 공공시설물 배치를 권장한다.

- 공공시설물 배치시 개방성에 집중하고 보도위의 시설물은 설치와 규모를 최소화한다.
- 보도에서는 운전자의 시선을 차단하는 시설물과 버스 승·하차시 이용객 인지를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일체 금지한다.
- 턱 낮추기로 경사가 발생하는 곳의 수직지주 설치의 지양한다.
- 볼라드 배치 시 휠체어·자전거 등이 통과할 수 있는 간격을 확보한다.
- 다른 공공시설물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화분대 설치의 지양한다.



02 공공시설물은 소규모의 연속적인 배치를 권장하여 보행편의와 활기찬 거리를 조성한다.

-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형 공공시설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펜스의 설치를 최대한 자제하고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수목·식재 등을 권장한다.
- 통합지주와 식재간의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
- 규모가 큰 지상기기 등은 가급적 띠녹지나 인접 공공건축물의 녹지 내에 통합 설치한다.
- 고채도, 고명도의 시설물 설치의 색채를 제한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03 교통약자 보호구역

-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도록 노면요철 포장, 감속 시설, 노면 표지 등을 설치한다.
-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시설물은 도시 통합디자인을 따라 간결하게 처리하되, 주의표지 등은 시종점부 중심으로 표기한다. (시설물 세부가이드라인-펜스편 참조)



04 횡단보도

- 횡단보도에 맨홀이 설치되는 경우, 맨홀 뚜껑을 개폐할 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맨홀 표면에 횡단보도의 노면표기나 글자를 도색하는 것은 지양한다.
- 횡단보도 전면 보도에 점형블록을 설치할 경우, 횡단보도 폭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2.3 야간조명

01 보도 폭에 맞는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 광공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광원노출은 지양한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의 야간 시간대별 조명의 조도 및 휘도를 준수한다.



02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야간조명이 되도록 한다.

- 상업, 업무시설 밀집부 보행공간은 야간활동을 고려한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한다.
- 상업, 업무시설 밀집부 보행공간은 인접하는 저층부 조명색채 및 조명높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연속성 있는 야간조명이 되도록 한다.
- 교육연구시설, 산업시설부 보행공간은 외부공간에 간접 조명방식을 통해 은은한 분위기로 연출한다.
- 주거지역 보행공간의 야간조명은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야간경관을 연출한다.
- 시공시 반드시 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Part II. 공공공간

3. 자전거도로

3.1 계획

01 차도 및 보도 여건에 맞추어 자전거도로 설치여부를 신중히 계획한다.

- 보차혼용 자전거도로는 유효보도 폭이 4m 이상 확보되는 곳에서만 계획한다.
- 보도와 다른 재질을 쓸 경우 사이 경계를 매끈하게 시공하고, 같은 재질을 쓸 경우 경계선을 명확히 표시한다.



02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 동선과 엄격히 구분한다.

- 자전거 전용도로는 동선과 보행 동선을 엄격히 분리하고 자전거 도로상 돌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 포장면에 자전거 도로 노면 표지를 명확히 표기한다.
-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횡단보도와 별도로 자전거 횡단보도를 계획한다.



03 자전거도로의 색채는 단색 저채도로 한다.

- 자전거도로 포장시 과도한 색채사용을 지양한다.
- 단색으로 계획하되,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원색 사용은 지양한다.
- 자전거도로의 색채는 상충구간에만 적색을 사용하며, 상충구간이 아닌 곳에는 낮은 채도를 적용한다.
(행정자치부 국가자전거정책기본계획 기준 준수)



3.2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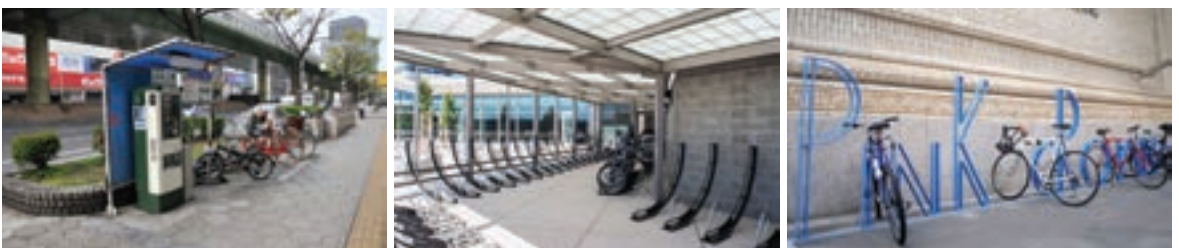
01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공시설물 배치를 지양한다.

- 자전거도로 통행선상에 가로수, 안내시설물 등의 설치를 지양한다.
- 부득이하게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우회도로 등의 보완대책을 제시한다.
- 자전거도로의 분리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낮은 경계석, 색상 등으로 구분한다.



02 자전거도로 이용을 지원하는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대중교통 연계지점, 주요 건물들과 결절점, 휴게시설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와 대여소를 설치한다.
- 자전거보관대는 옹벽, 교량 하부, 건축물 벽면 등을 활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3.3 야간조명

01 야간 이용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조명등을 설치한다.

- ▣ 자전거도로 경계부에 표지병 및 바닥 조명등 설치를 권장한다.
- ▣ 위험요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가로등 설치를 권장한다.



Part II. 공공공간

4. 공원 및 광장

4.1 계획

01 근린공원은 주변시설과 연계성을 높이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 기존 녹지체계와 연계성을 중시하고 도심지 녹지휴게공간이 될 수 있는 계획을 한다.
- 자연생태적 기술을 적용하고 휴게시설을 충분히 도입한다.



02 소공원은 개방적이고 편안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 담장 및 펜스설치를 지양하고 개방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 인접 보행가도로와 연계하고 단차를 없애 보행접근성을 높인다.
-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횡단보도와 별도로 자전거 횡단보도를 계획한다.



03 일반광장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개방감을 확보한다.

- 이용빈도와 밀도에 따른 적정규모를 설정한다.
- 대규모 광장 형성시 조경 등의 공간분할을 통해 적절한 휴먼스케일을 조성한다.
- 파고라, 식재와 함께 벤치를 설치하여 이용율이 높은 공간을 권장한다.



04 교통광장은 안전한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장소성을 강조한다.

- 보행동선과 교통동선을 분리하여 안전한 동선을 계획한다.
- 보도와 차도, 광장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단차를 최소화한다.
- 교통광장은 장소성 부각을 위해 랜드마크 요소의 도입을 권장한다.



05 공원 및 광장의 연결녹지는 다양한 변화감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자연지형을 활용하고, 계절별로 다양한 변화감을 줄 수 있도록 가로수 열식 및 관목과 초화류를 활용하여 식재한다.

4.2 시설물

01 근린공원에는 자연친화 및 랜드마크 시설 등의 상징적 요소가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 시각적 노출이 많거나 이용자가 밀집되는 공간에 상징적 요소를 배치한다.
- 벤치를 충분히 설치하여 이용률이 높은 공간을 조성한다.
- 바닥 포장시 물 순환을 위한 투수성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02 소공원에는 개방적 공간감을 지원하는 시설물을 설치한다.

- 주민 휴게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되 시선차폐 시설물 설치는 지양한다.
- 공원 내 통합 사인시설물을 도입하고 쉽게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03 일반광장은 다양한 콘텐츠를 수용하는 유연한 시설물을 계획한다.

-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이벤트가 상시 기획될 수 있는 이동식 시설물을 계획한다.
- 시설물은 가급적 광장의 경계부에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04 교통광장은 인접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도로와 높이가 일치하지 않는 교통광장은 경사로를 함께 설치한다.
- 인접가로와 연계하여 바닥패턴, 시설물 등의 통합디자인을 고려한다.

4.3 야간조명

01 야간 이용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연속적 보행등을 설치한다.

- 공원 내 보행로 및 커뮤니티 공간에 연속적인 보행등을 설치해 야간 이용성을 확보한다.
- 인접 주거공간에 빛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02 공원 및 광장에 접근하는 보행자의 접근성을 지원하는 야간조명을 연출한다.

- 공원 및 광장에 접근하는 보행, 자전거 등 이용 유형에 따라 조명계획을 구분하여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야간조명을 연출한다.



Part II. 공공공간

5. [특화] 특화거리 및 공개공지

5.1 계획

01 특화거리는 가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 보행에 불편함이 없는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휴먼스케일의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 식재 및 휴게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킨다.
- 특화거리는 주제 및 상징성을 부여하여 흥미로운 공간감을 확보한다.
- 지나치게 직설적인 디자인을 지양하고 친근한 주제와 형태, 편안한 색채를 권장한다.



02 특화거리의 보도와 전면공지는 연속성을 구현한다.

- 특화거리의 보도와 전면공지는 바닥의 높이를 일치시켜 하나의 공간으로 형성한다.
- 특화거리의 보도와 전면공지는 패턴, 재료를 통일하여 연속되는 공간으로 형성한다.
- 교통약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보도와 같은 경사도로 조성한다.



03 공개공지는 보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조성한다.

- 공개공지 조성시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자연스러운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가능한 공개공지는 광장형으로 조성, 활용도를 향상시킨다.
- 각각부의 공개공지는 휴게공간과 상업공간을 연계하여 활발한 활동을 유도한다.
- 인접한 공개공지는 연속적 연계를 통해 리듬감 있는 가로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04 기부채납된 민간부지, 공개공지의 계획 및 시설물 설치는 반드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다.

- 공개공지 등 특수한 공공공간의 설치시에는 반드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5.2 시설물

01 특화가로의 시설물은 특화가로 전체의 통합디자인으로 설치한다.

- 특화가로의 상징성을 갖는 주제형 시설물 디자인은 특화가로 전체가 연계 되어야 한다.
- 특화가로를 위한 시설물의 상징요소나 표현의 품격 부분 등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설치한다.
- 전통을 주제로 한 특화거리에서는 자연소재를 활용한 시설물 설치를 권장한다.



02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 전면에 보행자 데크 등을 부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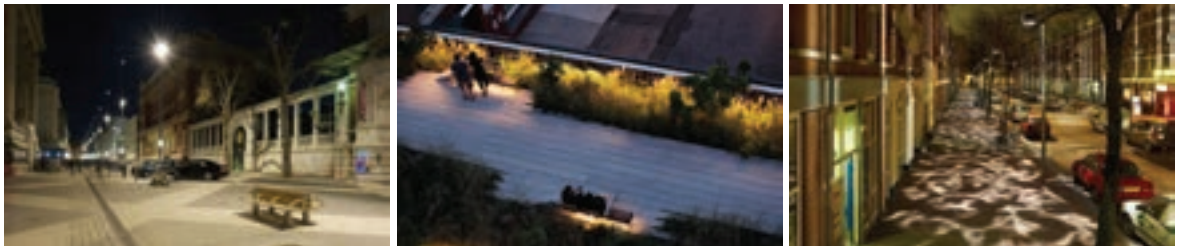
- 보행활성화를 위해 건축법과 지구단위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행자 데크 설치를 권장한다.
- 데크 조성시 재질 및 색채 등을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하고 특화가로 전체의 통합디자인을 권장한다.
- 테라스 설치시 벽과 기둥구조물 설치의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경관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5.3 야간조명

01 랜드마크 거점이 되는 특화가로는 상징적 야간조명을 연출한다.

- 랜드마크 주요거점을 포함한 특화가로는 집중적 조명계획을 통해 상징적 야간조명을 연출한다.
- 특화가로의 주요 관광 및 이벤트 공간에는 상징적 조명연출을 통해 야간명소화를 유도한다.
- 특화가로의 랜드마크에는 다양한 색상보다는 단일색상으로 상징적 의미를 강화한다.
- 특화가로의 결절점에 위치한 조명물이나 상징수목에 대한 야간조명 연출을 통해 가로의 시인성을 향상시킨다.



02 특화가로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야간조명을 연출한다.

- 수변공간의 경우, 수상으로의 직접적인 빛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간접조명에 의한 수변 야간조명을 연출한다.
- 한옥마을 등의 특화가로는 벽면에 대한 간접조명을 통해 시각적 부담감이 경감된 조명을 연출한다.
- 생태공원 및 녹지중심 특화거리 등에서는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을 계획한다.



Part II. 공공공간

6. [특화] 특화공원 및 광장

6.1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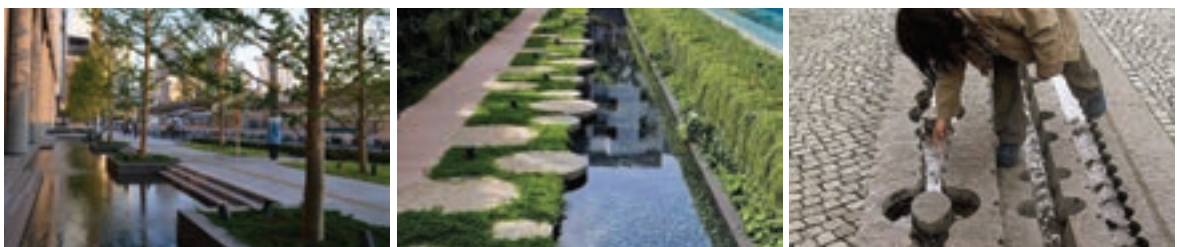
01 주제를 가진 특화공원 및 광장은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계획한다.

- 전통, 어린이, 친수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연출하는 특화공원 및 광장은 상징성이 잘 드러나도록 계획한다.
- 문화행사 부스, 소규모 판매시설 등을 함께 계획하여 문화콘텐츠로 기능하도록 계획한다.



02 수변시설을 통해 특화거리의 다채로운 체험환경을 구현한다.

- 물의 직간접 경험을 통해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 물을 사용하는 수경설비와 보행동선을 분리 배치하여 보행권을 확보한다.
- 수경시설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접근 동선과 유도방안을 계획한다.



03 수변공원은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하며 쾌적한 도시의 친수 특화 공간을 조성한다.

- 수변을 조망하거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특화공간을 권장한다.
- 길이가 긴 수변공간의 경우 일정구간마다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 수리적 안전성을 위해, 보행가로에서 하천변으로 이어지는 접근로는 하천물살과 평행방향으로 계획한다.
- 진입부에 수경시설 설치를 통한 특화 이미지 연계를 권장한다.



04 어린이관련 공원 및 광장은 안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특화공간으로 조성한다.

- 놀이시설과 더불어 학습체험시설이 복합화된 공간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의 발달단계별 놀이 영역을 구분하는 공간계획을 권장한다.
- 다양한 연령층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어린이 안전을 고려해 개방성을 강조하고 범죄예방설계 기법을 적용한다.



05 특화공원, 광장의 특화주제 적합성 및 표현의 품격 적합성은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 특화공원 및 광장의 특화주제 설정과 계획을 통한 주제의 전달 효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계획한다.

6.2 시설물

01 상징조형물이나 상징수목을 조성하여 특화공원 및 광장의 특성을 부각시킨다.

- 특화공원이나 광장에서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의 상징조형물 등을 설치하되,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
 - ※ 단, 상징조형물은 반드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수종을 식재하는 등 차별화에 집중한다.



02 특화공원 및 광장의 시설물은 주제성을 갖추되, 도시의 통합디자인과 연계되어야 한다.

- 특화시설물은 정체성 구축을 위한 차별화 디자인을 권장한다.
- 특화시설물은 도시 전체의 시설물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03 수변공원의 시설물은 유수 흐름과 안전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 수상사고를 고려한 안전시설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 하천공원의 화장실 등 시설물은 홍수를 대비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내판은 유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최소 수량 설치를 권장한다.
- 수변 산책로의 난간은 개방형으로 하며, 자연소재 및 저채도 색채사용 시설물을 설치한다.



04 친수공간의 인공적 수경 설비는 직접적 노출을 지양한다.

- 수경설비의 직접적 노출을 지양하고, 미끄럼을 최소화하는 재료와 마감을 사용한다.
- 바닥분수 설치시 그레이팅 등을 활용, 어린이의 발이 끼이지 않도록 구멍의 크기를 조정한다.



05 어린이 관련 공원 및 광장 등의 시설물은 어린이와 동반가족을 함께 고려한다.

- 어린이 동반가족과 노인 등 다른 연령층을 고려한 휴게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어린이 발달단계별 놀이영역과 수준을 고려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 어린이 정서함양을 위해 다채색 시설물을 사용하되, 원색은 지양한다.
- 어린이 눈높이를 고려하여 시설물 높이를 설정한다.

6.3 야간조명

01 특화요소에 대한 조명계획을 통해 공간감을 연출한다.

- 상징요소가 되는 주제시설이나 상징 자연요소 등에 대한 야간조명으로 강조점을 형성한다.
- 직접적 조명방식보다는 간접조명을 통한 은은한 공간감을 형성한다.
- 어린이 관련 공원 및 광장 등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밝게 조명을 계획한다.
- 축제, 이벤트와 연계하여 동적인 야간경관 연출을 통해 관광명소화를 유도한다.



02 수목과 벽면 등을 활용하여 친근하고 풍부한 야간조명을 연출한다.

- 전통을 주제로 한 공원 및 광장 등에서는 간접조명 중심으로 연출하여 은은함을 강조한다.
- 생태환경이 주제가 되는 공원 및 광장 등에서는 최소한의 조명을 계획한다.

03 수변공간의 야간조명은 최소 조도로 정온한 경관연출을 권장한다.

- 수변부는 최소한의 조도를 유지해 야간활동을 증진하고 안전성을 확보한다.
- 수변부 가로시설물과 조명시설을 연계하여 수변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인다.



분 류		체크리스트 항목	사업 부서	시행 부서	디자인 부서
공공공간	계 획	1. 공원 및 광장, 특화거리 계획시 실제 주변경과의 관계 및 조화를 판단할 수 있는 근경, 중경, 원경의 입체적인 이미지를 제시하였는가?			
		2. 보도의 쾌적성을 향상시키도록 충분한 녹지가 확보되었는가?			
		3. 보도 폭과 규모에 따른 공공시설물 설치의 종류와 방식이 고려되었는가?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과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이 고려되었는가?			
		5. 자전거도로 설치의 필요와 적정성이 검토되었는가?			
		6. 자전거도로의 색채는 단색 저채도로 계획되었는가? (상충구간에만 적색 사용)			
		7. 주변과 연계성이 높고 개방적인 근린공원, 소공원, 광장으로 계획되었는가?			
		8. 특화거리는 활력과 흥미, 주변공간과의 연계, 가로 전체의 통합디자인이 적절히 계획되었는가?			
		9. 특화공원 및 광장은 문화콘텐츠와 생태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10. 기부채납된 민간부지 및 공개공지 계획시 디자인부서와 사전협의를 했는가?			
	시설물	11. 시설물 배치시 개방성에 집중하고 보도위 시설물은 설치와 규모가 최소화 되었는가? (편의시설물 제외)			
		12. 소규모의 연속적 배치로 보행편의를 지향하고 활기찬 느낌을 주도록 계획되었는가?			
		13.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시설물은 도시 통합디자인을 따라 간결하게 처리되었는가?			
		14. 자전거도로 계획시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공시설물 배치에 주의하고 지원 편의시설을 계획하였는가?			
		15. 특화거리와 특화공원, 특화광장의 시설물은 일관된 주제와 문화적 콘텐츠를 고려한 통합컨셉으로 검토되었는가?			
	야간조명	16. 보도 폭에 맞는 조도와 휘도, 조명기구의 크기 등 적절한 조명계획이 수립되었는가?			
		17. 상업, 업무, 주거지역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야간경관이 계획되었는가?			
		18.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고려한 야간조명이 계획되었는가?			
		19. 공원 및 광장의 접근성과 다양한 이용을 위한 야간조명 연출이 이루어졌는가?			
		20. 특화가로와 특화공원에는 야간명소화를 유도하는 상징적 야간경관이 적절히 계획되었는가?			
	사전협의 여부	21.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와 구체적 협의를 거쳤는가?			
	미반영 점검항목 및 사유 기재				
	디자인 담당부서 협의내용 기재				

표 2-3 공공공간 체크리스트

Ⅲ. 공공시설물

1. 개요
2. 공공시설물 공통
3. 시설물별 세부

Part III. 공공시설물

1. 개요

1.1 정의

-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설계·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과 일부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1.2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의 정의에 따른 전주시 공공시설물의 대상은 아래 표와 같이 9종으로 분류된다.

공통		
세 부	보행시설물	버스·택시쉼터, 볼라드, 펜스, 횡단방지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가로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덮개, 화분대 등
	조명시설물	가로등, 보행등 등
	휴게시설물	벤치, 파골라 등
	판매시설물	가로판매대 등
	위생시설물	휴지통, 음수대 등
	관리시설물	지상기기, 맨홀, CCTV, 방음벽 등
	정보시설물	사인시설물
	기타	기타 공공시설물

표 3-1 전주시의 행정구역(2015년 6월 30일 기준, 위키백과)

1.3 가이드라인 체계

- 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전주시 공공시설물이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분류별 유의사항을 다룬다. 시설물 세부 분류는 보행시설물, 가로녹지시설물, 조명시설물, 휴게시설물, 판매시설물, 위생시설물, 관리시설물, 정보시설물, 기타의 9가지로 분류한다.
- 공통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항목은 계획, 형태 및 구조, 재질 및 색채, 그래픽 및 조명의 4가지 규정항목을 다루며, 세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의사항을 규정항목으로 가이드라인 지침을 제공한다.

기본방향	가이드라인 분류	규정항목
기능과 편리성 추구 주변환경과 조화 및 장식의 최소화 시설물간 통합과 연계 추구 효율성 및 기능성을 고려한 배치 지역별, 지구별 정체성 강화	공공시설물 공통 시설물별 세부	계획 형태 및 구조 재질 및 색채 그래픽 및 조명 분류별 유의사항

표 3-2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체계

Part III. 공공시설물

2. 공공시설물 공통

2.1 계획

01 주변 환경 및 연계된 공공시설물과의 조화를 우선한다.

- 공공시설물 계획시 설치 전후 비교이미지 등을 통해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 공공시설물 보수 및 추가 계획시 기존 공공시설물과의 연계성을 반드시 검토한다.
- 공원 및 녹지 주변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유사한 색채 및 자연소재를 사용하여 조화를 추구한다.



02 전주시 공공시설물간 통합과 연계를 추구하여 통합디자인을 구현한다.

- 공공시설물간 이미지 연계와 적절한 배치간격 설정을 사전에 검토한다.
- 통합가로시설물의 개발 및 적용을 적극 권장한다.
- 차량중심지역에서는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판, 신호제어기 등을 가로등 중심으로 통합한다.
- 보행자중심지역에서는 지역안내사인, 주소체계사인, 사설안내사인 등을 도시안내 사인중심으로 통합한다.
- 전주시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또는 추천제품의 사용을 권장한다.



03 보행동선에 방해되지 않는 설치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공간구조를 잘 파악하여 이용자 보행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부피가 큰 공공시설물은 구조를 최소화하고 보행자 이용성을 중심으로 위치를 설정한다.

- 공공시설물의 기초 시공시 지지대와 앵커볼트가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시킨다.
- 띠녹지 및 완충녹지를 가진 경우, 공공시설물들은 최대한 녹지 부분에 배치되도록 한다.



04 지역별, 지구별 특성에 부합되는 정체성이 표출되도록 디자인한다.

- 상징가로, 특화가로 등의 공공시설물은 상징성을 부여하되, 전주시 전체 공공시설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통상징가로 등 지역상징성이 강조되는 지역의 공공시설물 개발시에는 시설물간 통합 모듈체계로 개발하여 정체성을 구현한다.
- 전주시의 공공시설물이나 특수구조물 중 전통해석이 필요한 경우, 한옥의 품격을 고려한 진품가치 중심의 시설구축을 한다.
※ 단, 한옥처마 버스쉼터에는 진품 기와 및 처마구조 사용



2.2 형태 및 구조

01 기능성과 안전성을 우선하며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복잡한 디자인 및 장식성을 추구하거나 장식이 과도한 디자인은 지양한다.
- 남녀노소 모든 이용자의 사용이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디자인한다.
- 모서리부의 처리 및 풍압, 무게 하중 등 이용자의 안전을 다측면에서 고려한다.



02 파손 및 유지관리를 감안한 보수성이 좋은 형태 및 구조를 권장한다.

- 관리가 용이하고 반달리즘 등에 대응하기 쉬운 형태 및 구조로 디자인한다.
- 경사진 장소에서도 항상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구조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2.3 재질 및 색채

01 공공시설물의 재료마감은 무광택 저채도 표면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가급적 재료의 고유색 사용을 권장한다.
- 금속의 경우 무광택 처리를 기본으로 하며, 상징성이 요구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투명부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은 반드시 강화유리로 하고, 폴리카보네이트 등 열화현상이 발생하는 소재의 사용을 금지한다.



02 공공시설물의 색채는 저채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원색 또는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하고, 디자인 담당부서가 지정하는 공공시설물 지정색과 통합하여 계획한다.
- 강조 색상은 특별한 인지가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03 전주시 공공시설물 색채는 '전주시 표준색' 통합 및 연계를 따른다.

- 공공시설물 색채는 지정된 '전주시 표준색'을 참고한다.
 - 지주통합시설은 반드시 전체 색채를 통일한다.
- *도료용 표준색 견본 2008년 1판/ 한국페인트 · 잉크공업 협동조합 I-283501, I-315002, I-305004



2.4 그래픽 및 조명

01 공공시설물에는 지자체 로고 및 심볼마크와 관련된 그래픽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지자체 심볼마크 및 로고, 슬로건 등의 각종 문구 표시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는 그 규모를 최소화한다.
- 스위트루로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그래픽은 지속적으로 제거한다.



02 안전확보 및 위생관리, 정체성 확보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한다.

- 안전확보 및 야간인지성 확보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한다.
- 정체성 구현을 위해 야간조명을 내장한 공공시설물은 빛의 색채, 조도의 균질성 등에 있어 통합과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Part III. 공공시설물

3. 시설물별 세부

3.1 버스·택시쉼터

01 다양한 설치공간에 대응하는 조합의 용이성을 가져야 한다.

- 설치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조합이 쉽고 변형이 가능한 모듈형 디자인을 권장한다.
- 설치 장소의 도로 여건과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02 최소 보행 폭을 확보하도록 쉼터의 규모를 산정한다.

- 보행동선과 차량 탑승대기 동선이 분리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버스쉼터의 방향을 돌려서 거꾸로 설치하거나 후면부에 옹벽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부만을 설치하는 등 보도 폭 확보를 위해 적극적 설치를 권장한다.
- 보도와 인접하여 녹지대나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가급적 녹지대 내에 설치하여 최대 보도 폭을 확보한다.
- 보도 폭과 이용객 수에 따라 벤치의 수량 조절이 가능한 구조를 권장한다.



03 개방감을 확보하고 시야를 차폐하는 시설 설치를 지양한다.

- 진입하는 버스나 택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진입부는 개방 또는 투명하게 처리한다.
- 가로판매대, 휴지통, 화분대, 자전거거치대 등 버스진입 확인을 방해하는 시각적 장애시설물은 차량진행 방향의 반대방향에 설치한다.



04 야간조명, 버스 도착안내 정보시스템 등의 부가시설물은 통합적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 야간 인지성 향상을 위해 조명형 노선안내시스템 및 공공시각정보매체 설치를 권장한다.
- 환승성격이 강하고 보도 폭이 충분한 지역의 경우 자전거거치대 연계설치를 권장한다.
- 노약자나 장시간 대기 승객을 위해 일시적 휴식이 가능한 벽면부착형 또는 독립형 벤치 설치를 권장한다.
- 지붕은 5도 이상 경사를 확보하고, 빗물흐름이 자연스러운 구조로 설계한다.



3.2 볼라드

01 법적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준수하여 높이는 800~1,000mm, 직경은 100~200mm, 간격은 1,200~1,500mm 범위를 준수한다.
- 높이가 800mm 이하인 비규격 볼라드부터 우선 제거한다.
-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가급적 원형 형태의 제품을 설치한다.
- 탄성블럭 등의 완충장치를 지면에 매립하도록 권장한다.
-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띠 형태의 반사판 부착을 권장한다.



02 가급적 최소한으로 설치하여 보행장애를 최소화한다.

- 도시 정온화를 위해 불필요한 볼라드를 제거한다.
- 차량주정차 방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수량 설치를 권장한다.



03 볼라드 설치 및 교체시 디자인을 통합하여야 한다.

- 다양한 디자인보다 몇 가지의 통합된 디자인으로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규 설치 및 파손 등으로 인한 부분 교체시, 연속적이며 통합적 이미지를 중시하여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 단, 단종된 경우 최대한 유사한 시설물을 선택한다.

3.3 펜스

01 경사구조 등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보도펜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연속성을 중시하는 가로형을 기본으로 한다.
- 경사로 인한 높이차이, 계속되는 경사로 등에서는 펜스 지주가 수직이 될 수 있는 구조 및 형태를 가져야 한다.
- 파손된 구간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용접방식이 아닌 체결 방식의 구조를 권장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및 발을 짚고 타고 넘을 수 있는 위험성이 예측되는 지역에는 세로형상을 권장한다.



02 어린이 보호구역 펜스는 시종점부의 인지성을 강조하고 단순하게 처리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펜스의 색채는 도시 일반펜스와 동일색채로 하고, 노란색 등의 강조색을 최상단부 등에만 부분적으로 사용하되 한 가지 색채만을 사용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알림 그래픽은 구간 시작부와 끝부분에만 표기한다.

- 노란색 등의 강조색을 최상단부 등에만 부분적으로 사용하되 한 가지 색채만을 사용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펜스에 캐릭터 및 희화화된 표현은 금지하며, 고딕서체로 글씨만을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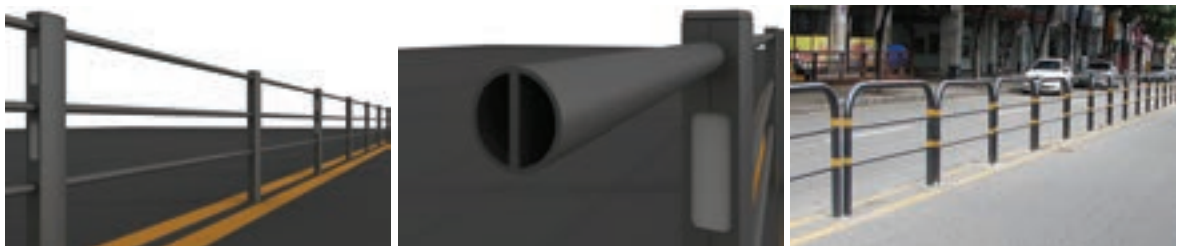
03 펜스를 주제로 하는 이미지 연출은 금지한다.

- 펜스에 경관연출을 위해 LED조명 등을 통한 동적조명, 선조명 등은 금지한다.
- 자연 또는 친환경이미지를 위한 목재 펜스 구성시 붉은색에 가까운 채도 높은 색채는 금지한다.
- 문화시설 및 특정 상황에서 투명펜스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강화유리를 사용하며, 투명 면에 광고물 및 장식물 부착을 금지한다. (열화현상이 발생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사용금지)

3.4 횡단방지시설

01 횡단방지시설은 도시이미지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므로 최소화한다.

- 차량속도가 빠르지 않고, 무단횡단이 많지 않은 시내 구간은 횡단방지시설을 최소화 한다.
- 횡단방지시설은 도시 전체를 같은 개념의 형태로 사용하여 통일하여도 무방하다.
- 최대한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와 힘이나 처짐이 없는 단면구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02 후퇴색으로 하고 슬로건, 그래픽 표시 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가로를 이분하는 위압적 시설물이 되기 쉬우므로 가급적 어두운 후퇴색 계열로 설정한다.
- 안전표식은 시작부와 종점부, 중심부 일부 등에 원색의 띠나 파선을 적용할 수 있다.
- ‘교통안전’, ‘길을 건너지 마시다’ 등 교통슬로건 부착을 금지한다.
- 야간 안전운전을 고려하여 일정 간격으로 반사시트 부착을 권장하되, 차량 이동속도를 고려해 간격을 두어 4~5개의 지주마다 부착한다.



3.5 자전거보관대

01 가로공간의 환경을 고려하여 규모와 형식을 계획한다.

- 자전거보관대는 모듈개념으로 제작하여 가로여건에 따른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
- 캐노피형 보관대는 광장이나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 면적이 확보되는 곳에만 설치토록 한다.
- 보도의 유효보도 폭 확보를 위해, 보도보다는 공개공지 등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02 캐노피형 자전거보관대는 안전기준과 투명면의 색채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 캐노피형 자전거보관대는 안장에 앉은 높이에서 천장면이 닿지 않도록 2,200mm 이상 높이로 설계한다.
-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투명한 재료로 디자인하는 것을 권장하며, 유지관리를 위해 투명재료는가급적 강화유리로 하고, 유채색 폴리카보네이트 천장은 가급적 금지한다. (녹색 이나 청색 등 자극적 색채)
- 곡선 형태 등 부득이한 경우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사용이 가능하나 주변환경을 고려한 색채사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3.6 가로수 보호덮개

01 보행편의성 및 평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가져야 한다.

- 보도와 높이를 같게 설치하여 보행편의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보도 폭이 좁은 곳에서는 수목보호대의 크기를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가로특화사업 등으로 수목을 비추는 경관 조명설치시 별도의 돌출형 구조보다는 가로수 보호덮개에 조명구조를 삽입하도록 권장한다.



02 지속적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 수목성장에 따른 수목 직경의 확장시, 일부분을 떼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뿌리가 들고 일어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로수 보호덮개 절도행위 등 반달리즘을 고려해 일반적 나사구조가 아닌 취부 방식을 택할 것을 권장한다.
- 식물의 원활한 뿌리 호흡을 위하여 가로수 보호 덮개 아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가로수 보호 덮개 하부의 청소가 용이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파손되거나 뿌리로 인해 들고 일어난 곳의 가로수 보호덮개는 우선 제거하고, 마사토 다짐 또는 자갈 등으로 처리하되, 동일 가로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10주 이상 수량 단위로 개선 할 것을 권장한다.



3.7 화분대

01 보도의 여건과 연계되는 모듈형 디자인을 권장한다.

- 화분대는 보도와의 넓이와 설치수량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한다.
- 가로수 보호덮개 넓이 내에서 적정단위로 반복 결합될 수 있는 규격화를 권장한다.

- 띠녹지가 조성된 구간에는 화분대를 설치하지 않는다.
- 볼라드 용도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 내부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한다.



02 토심 및 벤치의 복합이용시 등을 고려한 적정 높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소관목은 45cm, 대관목은 60cm의 생육 최소 토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벤치로 복합 이용될 경우 이용에 편리한 높이 400±50mm 및 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3.8 가로등

01 교통신호, 교통표지, 안내사인, 배너 등 복합적 기능을 통합해 가로환경을 단순화한다.

- 교통표지 및 각종 안내사인류 등의 기능을 통합하는 통합지주 개념을 권장한다.
- 통합형 지주 가로등의 암 형태는 가급적 직선으로 하여 시각적 복잡성을 완화한다.



02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시 연속성 관계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 동일한 가로 좌우측 가로등 디자인은 통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일 형태가 불가능할 경우, 색채는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

- 기존 가로등의 부분 변경시 조명장착부의 형태를 중심으로 하되, 간결한 형태를 권장토록 한다.
- 교차로를 중심으로 다른 형태의 가로등이 교차되어 설치되는 경우, 대로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03 부드러운 조명색채를 권장하고, 눈부심이 없는 형식을 채택한다.

- 가로등의 조명색채는 사용공간의 용도에 맞는 색채를 적용하며, 가급적 부드러운 톤의 색채를 권장한다.
- 명확한 조사 각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Cut-off를 반영한 제품 선택을 권장한다.



3.9 보행등

01 낮은 조도기준에 부합하는 간결한 형태를 권장한다.

- 가로등과 달리 조도기준이 낮으므로, 암의 길이가 긴 형태는 가급적 배제한다.
- 보행등 디자인은 독립적 이미지보다는 배경이 되는 공원이나 광장, 가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조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02 보행환경에 적합한 색채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고광택 스테인리스 소재의 보행등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공원이나 광장 등 설치지역의 성격에 따라 목재 등의 친환경소재를 권장하되, 색채가 자극적인 붉은색 목재 등은 사용을 금지한다.

- 보행등의 조명색채는 설치되는 지역의 성격에 맞추어 색온도 설정이 필요하다.



03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설치와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 수목이 식재된 시설물구역 등에 통합설치를 권장한다.
- 보도면이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반드시 고정볼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입 처리한다.
- 불력형 바닥재일 경우 정연한 마감을 위해 보행등이 설치되는 시공면만 부분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 매입하는 마감도 권장하다.
- 명확한 조사 각도 설정이 가능한 제품을 권장한다.
- 자동 점멸장치 또는 시간조절장치 부착을 권장한다.



3.10 벤치

01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형태 및 높이, 크기를 설정한다.

- 한국인 신체표준치수 규격에 근거하여, 400~450mm의 좌판높이를 설정한다.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보도통행 우선원칙에 따라, 보도 폭이 좁은 보도 설치시 가급적 시설물구역 쪽에 일렬 배치한다.
- 국토교통부 조경설계 기준에 의거, 위생시설인 휴지통과는 최소 900mm 이격, 음수전과는 최소 1,500mm 이격하여 배치한다.



02 다수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디자인과 설치를 권장한다.

- 체류시간이 긴 장소일 경우 목재 좌면을 권장한다.
- 신체와 접촉하는 모든 부위는 안전성을 위해 둥글게 처리하거나 별도의 안전마감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좌면은 우천 시 빗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가 용이하고 건조가 쉽게 되는 구조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목재 사용시 벗겨지기 쉬운 유색페인트 도장을 지양한다.
- 파손된 벤치 수리시 좌면에 동일소재를 적용하여 개선한다.



3.11 파골라

01 단순한 구조를 권장하고, 설치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추구한다.

- 개방성이 확보되는 최소한의 구조로 디자인한다.
- 설치 장소에 따라 확장 및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도록 한다.
- 가급적 벤치를 함께 설치하여 장시간 휴식을 지원하도록 한다.
- 조명을 별도로 내장하지 않은 경우 가로등, 보행등 등의 조명시설과 인접 설치한다.



02 지붕은 채광을 고려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 지붕 상부는 그늘막을 형성하되 채광이 고려되어야 한다.
- 지붕 차폐 시 자외선 및 열에 의한 변색이나 형태변화가 크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다.
- 우천 후, 배수가 용이하도록 지붕 기울기를 주어 설계한다.



03 휴먼스케일에 유의하여 계획한다.

- 휠체어의 진입이 가능하고 휴식공간 내부에서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한 1.5mX1.5m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내부 천정부 높이 2,200~2,500mm를 확보한다.
- 등받이와 손잡이 등 노약자를 위한 부가적 지원 설비 설치를 권장한다.



3.12 가로판매대

01 보행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 판매자의 여건과 보행가로 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격을 설정하되, 최대한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구조를 권장한다.
- 버스쉼터 주변에 설치하는 경우, 차량이 들어오는 방향 쪽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벤치와는 최소 1,000mm 이상, 버스쉼터와는 최소 2,000m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02 다수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디자인과 설치를 권장한다.

- 조명, 차양막, 환풍기, 계량기 등 모든 시설을 최대한 매입토록 하여 불필요하게 돌출되는 형태가 없도록 한다.
- 판매시간 외에는 모든 부속물이 셔터로 가려질수 있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2,600mmX1,400mmXH2,500mm 내외 규격으로 불필요하게 커지지 않도록 설정한다.

- 가로판매대 하부에 높이 조절장치를 설치, 수평을 유지하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도로쪽 및 측면을 가리는 형태의 간단한 구조물을 갖추도록 권장한다.



03 색채, 픽토그램, 광고 등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 전체적으로 색을 통일한다.
 - ※ 단, 가로별 특성화를 권장하거나 건물 군 또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색채조화를 고려하여 별도의 색채를 지정할 수 있다.
- 관리번호 및 가로판매대 픽토그램은 일관된 체계로 구성하여 부착한다.
- 광고는 전후면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 단, 공익광고는 규격을 최소화하고 설치위치의 타당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설치각도는 빗물고임 방지를 위해 5도 내외 경사를 권장 한다.

3.13 휴지통

01 합리적 수거정책 및 유지관리 용이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조경설계 기준을 준수하여 휴지통과 벤치간 이격거리는 900mm 이상으로 한다.
- 재활용 표지 등 그래픽 표기시 KS표준을 사용토록 권장한다.



02 유지관리 용이성을 지원하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 상부는 기울어진 형태를 취하여 휴지를 올려놓지 못하도록 한다.
- 재떨이가 부가되는 경우, 측면에 설치토록 하여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가급적 금속소재를 사용하되, 공원 등의 경우에는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 금속재 위에 목재함 등의 표피재를 별도 제작하여 덧씌우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03 합리적 수거정책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형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 휴지통은 전주시의 수거 정책에 따른 합리적 방법을 결정 후, 도시 전체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오물 회수빈도 등에 따라 시건장치 설정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3.14 음수대

01 안전 및 청결관리를 고려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주변부 바닥에 미끄럼 방지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내부식성이 강한 재료사용을 권장한다.
-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물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잠금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02 이용자를 배려한 휴먼스케일을 적용해야 한다.

- 휠체어 사용자의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확보 구조를 권장한다.
- 한국인 인체지수 조사를 참조하여 성인과 어린이의 사용이 가능한 높이를 설정한다.



3.15 지상기기

01 지상기기의 설치면적을 최소화하고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 지상기기(함체형 시설물들-교통신호제어함, 가로등 분전함 등)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정되어야 한다.
- 보도상의 설치를 피할 수 있는 경우, 녹지대 또는 인접공공건축물의 조경구역 내에 통합설치 하는 것을 권장한다.
- 분전함 보호펜스와 같은 부가적 시설 설치의 지양한다.



02 광고물 부착을 금지하고 그래픽 사용을 최소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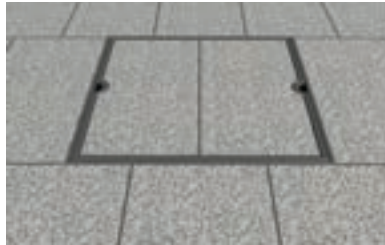
- 그림이 부착된 지상기기는 단색의 광고물 부착방지 필름으로 교체할 것을 권장한다.
- 반드시 특별한 주의가 주어져야 하는 위치에 설치된 지상기기가 아니라면, 노란색과 검은색 사선띠 형태의 처리는 지양한다.
- 관리번호 및 안전을 위한 픽토그램 등을 일관된 체계로 구성하여 부착할 것을 권장 한다.



3.16 맨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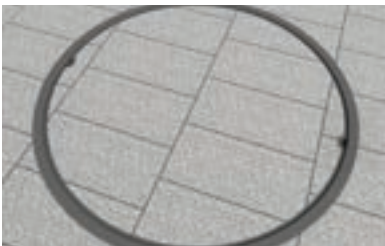
01 맨홀의 용도에 따라 재료이용 및 표기의 원칙을 적용한다.

- 차도용 맨홀과 보도용 맨홀로 구분하여, 차도용 맨홀에는 전주시를 표기하고 보도용 맨홀은 보도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매입 마감한다.
- 맨홀은 KS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 우천시 보행자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금속 맨홀 뚜껑의 상부에는 요철이 있는 패턴적용을 권장한다.
- 뚜껑, 프레임, 물받이 부분에는 압축강도가 우수한 주철 또는 주강을 사용하고, 손잡이 부분에는 압연강을 사용한다.
- ‘우수’, ‘통신’ 등과 같은 설치목적 표기가 아닌 문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 하수맨홀 뚜껑에는 우수와 오수 구분 명기를 권장한다.



02 보행 평탄도를 위해 연결부분은 정밀하게 마감되어야 한다.

- 지면과 만나는 부분은 정교하게 마감되어야 한다.
- 맨홀 주변 마감시 깨끗이 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 (맨홀 주변 마감시 블록에 둘러싸여 마감이 어렵거나 파손이 심한 영역의 경우, 맨홀의 약 1.5배 면적을 기준으로 정사각면 형태로 콘크리트로 깨끗이 마감하고 바닥면과 수평수직을 맞추어 정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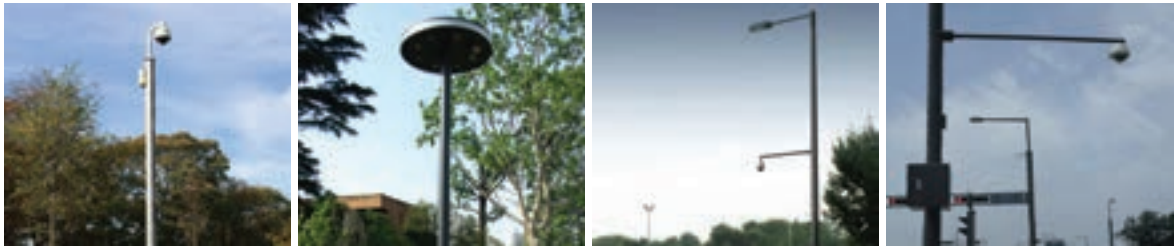


3.17 CCTV

01 CCTV는 시야가 차단되지 않는 위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 CCTV 설치 시 다른 가로시설물에 의해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설치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 CCTV의 돌출부 구조를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보도에서는 가급적 띠녹지부와 시설물 구역에 설치하되, 신호등주, 가로등주 등이 복합된 경우 통합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02 CCTV 녹화중 표기는 원거리에서도 인지될 수 있어야 한다.

- 방법 CCTV 또는 교통 CCTV 녹화 중임을 표기하는 사인 패널은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는 색채를 적용한다.
- CCTV 표기 서체 및 규격 등은 전주시 관련 부서의 지침 또는 협의에 따른다.



3.18 방음벽

01 위압감과 폐쇄성을 감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사용을 권장한다.

- 폐쇄적인 이미지의 방음벽 설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개방적인 이미지의 방음벽 설치를 권장한다.
- 방음벽의 높이를 올리는 것보다 방음림과 결합하여 높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권장한다.
- 시각적 개방성이 있는 투명 강화유리 등의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여 조망, 일조, 채광 등을 향상시킬 것을 권장한다.
- 투명 방음벽에서 최상단부 수평 프레임은 삭제 또는 최대한 가늘게 보이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02 저채도 색채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적극 고려 하여야 한다.

-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원색 또는 고 채도의 사용을 지양한다.

- 목재 등 천연재료를 활용하는 경우 재료 자체의 색상을 활용한다.
- 하단부 기초구조에 문양거꾸집 등을 통한 장식처리를 금지하고, 단순하게 처리한다.
- 방음벽 양 끝의 H형강은 끝나는 부분을 따로 마감해 외관 정리할 것을 권장한다.
- 방음벽에 벽면녹화를 시행할 때는 식물의 성장 및 사계절의 이미지 변화를 고려하여 적용 면적이나 위치를 결정할 것을 권장한다.



03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경제성을 위한 적절한 구조 및 형식, 재료를 사용한다.

- 투명소재 사용시, 열화현상이 발생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재료의 사용은 금지한다.
- 수직지주의 수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형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가 용이한 모듈구조를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3.19 사인시설물

01 정보가 잘 인식되도록 단순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 최대한 단순한 형태 및 구조로 정보를 인식하는데 최우선 초점을 둔다.
- 주변 환경요소들과 시각적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형태와 구조를 권장한다.
- 독립적인 패널 부착형 등 향후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 설치되는 장소가 경사면이라도 지주는 반드시 수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02 정보표기의 인지 가독성 향상을 권장해야 한다.

- 이용자의 혼동이 없도록 안내정보 외에 불필요한 요소는 배제한다.
- 문자 크기, 여백, 화살표 형태 및 위치 등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야간 사용을 위해 조명 사용을 권장하되, 정보 가독부에만 조명이 사용되도록 한다.



3.20 기타

01 기타 공공시설물들은 공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설물별 세부 가이드라인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모든 시설물은 가이드라인 공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저채도 색채 및 전주시 지정색채 활용, 수직지주 매입 등 공통사항은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02 공통기준의 준수 및 특이사항에 대한 관련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기타 공공시설물에 대한 상황적 해석 및 계획, 설계, 제작, 설치에 관련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분 류		체크리스트 항목	사업 부서	시행 부서	디자인 부서
공 공 시설물	계 획	1.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는가? (필요시 설치 전후 비교이미지를 검토하였는가?)			
		2. 기존 공공시설물과의 연계성은 검토하였는가?			
		3. 전주시 공공시설물간의 통합과 연계를 추구했는가?			
		4. 시설물간 통합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 통합디자인을 권장했는가?			
		5. 보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계획되었는가?			
	형태 및 구조	6. 기능성과 안전성 우선의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했는가?			
		7.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장식은 배제되었는가?			
		8. 바닥볼트의 돌출 등이 최소화되도록 처리되었는가?			
		9. 유지보수성이 좋은 형태 및 구조를 권장하였는가?			
		10. 경사진 장소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가?			
	재질 및 색채	11. 재료마감시 무광택 저채도 표면처리를 하였는가?			
		12. 전주시의 표준색 통합 및 연계정책을 준수하였는가? (도장처리 시 전주시 도장 표준색 사용)			
		13. 강조 색상은 주변여건과 시설물에 맞게 사용되었는가?			
	그래픽 및 조명	14. 지자체 심볼마크 및 로고, 슬로건 등의 각종 문구 표시는 크기를 최소화하고 무채색, 단색 처리하였는가?			
		15. 불필요한 그래픽 처리는 배제했는가?			
		16. 안전확보 및 야간인지성 확보가 필요한 시설물에 야간조명을 설치했는가?			
		17. 야간조명 필요 시설물의 빛, 색채, 조도 균질성이 확보되었는가?			
	사전협의 여부	18.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와 구체적 협의를 거쳤는가?			
	미반영 점검항목 및 사유 기재				
	디자인 담당부서 협의내용 기재				

표 3-3 공공시설물 체크리스트

IV. 공공시각매체

1. 개요
2. 일반 시각매체
3. 영상정보 시각매체

Part IV. 공공시각매체

1. 개요

1.1 정의

- 공공시각매체는 이용자에게 공공정보를 알릴 목적으로, 이용자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정보형 가로시설물 및 기타 유사한 기능의 시각매체를 의미한다.

1.2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의 정의에 따른 전주시 공공시각매체의 대상은 아래 표와 같이 2종으로 분류된다.

일반 시각매체	지역안내, 교통관련, 보행관련, 공공시설 시각매체 등
영상정보 시각매체	옥외전광판, 대중교통정보, 디지털 영상정보매체 등

표 4-1 공공시각매체 적용대상

1.3 가이드라인 체계

- 본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은 전주시의 공공시각매체 중 지역안내, 교통관련, 보행관련, 공공시설관련 등과 관계있는 일반 시각매체와 옥외전광판을 비롯한 영상정보 시각매체의 크게 2개 분류에 대한 규정항목을 다룬다.
- 공공시각매체의 가이드라인 규정항목은 계획, 형태 및 색채, 서체 및 프로그램, 조명의 네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지침을 제공한다.

기본방향	가이드라인 분류	규정항목
읽기 쉬운 도시 구현을 위한 계획 주변 환경과의 시각적 조화 추구 외국인 사용자 배려 시설물 통합 연계 권장 시민의 문화적 감성 증진	일반 시각매체 영상정보 시각매체	계획 형태 및 색채 서체 및 픽토그램 조명

표 4-2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체계

Part IV. 공공시각매체

2. 일반 시각매체

2.1 계획

01 인지가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 보행자 통행이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한다.
-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한다.



02 전주시의 다른 시설물과 통합적 디자인을 권장한다.

- 중복 설치는 지양하고 가급적 다른 지주 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 지역안내표지는 보행의 이상적 거리인 250m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 각종 안내표지 등 시각매체는 표준디자인을 바탕으로 통일성 있게 제작한다.

03 표기 요소는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고 원칙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 주요 표기 요소를 간단명료하게 표현한다.
- 정보전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정보는 통합 처리한다.
- 이용자 위치를 표시하는 경우, 현 위치를 기준으로 방위와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 ※ 단, 이용자 시점과 방위, 방향을 일치시키기 어려운 경우 위쪽을 북쪽으로 표시한다.
- 랜드마크, 공공시설, 교통시설, 문화재를 우선으로 표시한다.



04 문자는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고 외국어 병기 표시를 적극 권장한다.

- 한글표기 시 한글맞춤법 및 국어 로마자표기법과 외래어표기법에 맞추어 표시한다.
- 영문위주로 부득이하게 표기할 경우, 반드시 한글을 병기하여야 한다.
- 한글과 영문 병기시, 문자의 크기, 색채 등 위계를 나누어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 관광지, 관공서, 주요 환승 가능 정류장 표기에는 한글과 영문을 반드시 병기한다.
- 관광관련 시각매체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순서로 4개국어 표시를 적극 권장한다.
- 영문은 한글과 같은 방식의 세로쓰기를 하지 않는다.



05 특수목적 시각매체는 사용목적에 맞는 특성을 확보한다.

- 노면 표지는 원근법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확보한다.
- 노면표지는 진행방향에서 인지하기 쉽도록 수평으로 표기한다.
- 문화재 안내판은 주변 환경 및 문화재와 조화되는 크기 및 위치에 설치한다.



2.2 형태 및 색채

01 가독을 위한 기능적이며 단순한 형태를 권장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 공공공간 및 시설안내의 경우, 표기할 정보와 시인성을 고려하여 크기를 최소화한다.
- 시각매체용 패널 형태는 불필요한 정보 표기나 장식의 사용을 금지한다.
- 뒷면이 노출될 경우, 마감처리를 미려하게 하거나 양면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
- 풍압, 외부 물리적 압력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 지주형식의 경우, 후면의 지주결합 부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마감처리를 미려하게 한다.

02 시각매체 시설물은 전체 색채가 통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표지판과 지주는 동일한 색채를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표지판 본체와 안내 표지의 색채가 조화되도록 한다.
- 하나의 시각매체에 여러 색상을 사용하여 시각적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한다.
- 색약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색의 배색을 중요한 기호에 사용하지 않는다.



03 원색의 강조색은 부분적으로만 사용한다.

- 전주시 내 지역별 색채를 달리해야 하는 시각매체의 경우, 기본형을 바탕으로 행정구역 단위별로 재료나 색채를 부분 변경하도록 권장한다.
- 고채도의 원색은 강조할 부분에만 포인트 색으로 적용한다.



2.3 서체 및 픽토그램

01 판독성과 가독성을 고려한 서체를 사용하고 사용 목적을 반영한다.

- 가독성을 고려하여 문자의 서체, 크기, 간격을 결정한다.
- 판독성과 가독성이 낮은 장식적인 서체의 사용을 금지한다.
- 동일 목적 시각매체에서 서체와 픽토그램은 가급적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가독성 개선을 위한 자간, 행간, 단어 간의 조정은 허용하나 과도한 장평 조정 및 변형은 금지한다.
- 다국어 표기시 가급적 한글과 같은 계열(산 세리프, 세리프)의 서체를 적용한다.



02 직관적 픽토그램 사용을 권장한다.

- 일반 시각매체의 쉬운 인지를 위해 픽토그램을 적극 사용한다.
- 픽토그램 사용 시 국제 표준규격(ISO) 또는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 전주시가 별도 개발한 픽토그램이 있는 경우, 정체성 구현을 위해 전주시 픽토그램을 우선 사용한다.



2.4 조명

01 내용전달 위주로 계획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조명방식을 계획한다.

- 야간 식별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조명 또는 간접조명 방식을 권장한다.
- 시각매체 전체 조명보다는 내용전달을 위한 문자위주로 조명을 계획한다.

02 일반 시각매체에 과도한 원색 및 움직임이 연출되는 조명은 지양한다.

- 일반 시각매체의 쉬운 인지를 위해 픽토그램을 적극 사용한다.

Part IV. 공공시각매체

3. 영상정보 시각매체

3.1 계획

01 전광판 등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며 수시 점멸 및 변환 방식을 금지한다.

- 전광판 등 영상정보 시각매체는 공공건축물이나 많은 정보가 필요한 지역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주택지에 면하여 설치할 수 없고, 화면이 수시로 점멸, 변환하는 방식을 금지한다.
- 전광판 지주결합 부위 및 마감처리를 미려하게 한다.
- 최대 휘도값은 200cd/m²로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설정한다.

02 문자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가독성을 확보한다.

- 가독성을 고려하여 문자의 서체, 크기, 간격 등을 세밀히 결정해야 한다.
- 전광판에 문자 삽입시 문자는 전광판 면적의 2/3를 넘지 않도록 충분한 여백을 확보한다.
- 영상정보 표출 내용에 조잡한 그림의 직접적 사용을 지양한다

3.2 형태 및 색채

01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형태와 규모로 설정하여야 한다.

-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크기와 규모를 가급적 최소화 한다.
- 영상정보매체 자체의 형태를 복잡하게 구성하거나 장식을 부가하지 말아야 한다.

02 광원의 색상은 가급적 자극이 없는 색채를 지향해야 한다.

- 광원의 색상은 흰색을 원칙으로 하고, 컬러를 사용하는 경우 부드러운 색채를 사용한다.
- 한 전광판 내에 여러 색을 사용할 경우 시각적인 혼란을 주어 가로경관을 해치게 되므로 문자의 색상은 한 가지 단색을 원칙으로 한다.
- 영상정보 표출 내용에 조잡한 그림의 직접적 사용을 지양한다.

3.3 서체 및 픽토그램

01 판독성과 가독성을 고려한 서체를 사용한다.

- 공공정보 전달에 효과적인 단순하고 가독성이 뛰어난 서체를 사용한다.

02 문자는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고, 관광정보 등은 다국어 병기를 권장한다.

- 한글과 영문 병기시, 문자의 크기, 색채 등 위계를 나누어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03 누구나 인지가능하도록 직관적 픽토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에 사용되는 픽토그램은 직관적으로 인식 가능하여야 한다.
- 국제표준 픽토그램 또는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하되, 전주시 상징을 위한 픽토그램 등은 전주시 표준을 따른다.

3.4 조명

01 에너지 절감형 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 LED 및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기구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분 류		체크리스트 항목	사업 부서	시행 부서	디자인 부서
공 공 시각매체	계 획	1.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통합 설치하였는가?			
		2. 전주시의 다른 시설물과 통합적 디자인이 이루어졌는가?			
		3. 주요 표기요소가 간단명료하고 유사정보간의 통합 처리가 이루어졌는가?			
		4. 이용자 위치 표시의 경우 현 위치를 기준으로 방위와 방향이 일치되도록 구성되었는가?			
		5. 한글표기를 우선하고 외국어 병기표시를 적극 반영하여 계획되었는가? (관광지, 관공서, 환승정류장 등 필수)			
		6. 관광관련 시각매체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국어 표기와 순서가 적절히 표시되었는가?			
		7. 노면표지는 원근법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확보했는가?			
	형태 및 색채	8. 기능적이며 단순한 형태와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는가?			
		9. 시각매체용 패널에 불필요한 정보표기나 장식사용을 차단하였는가?			
		10. 시각매체 시설물의 전체 색채가 통합되었는가?			
		11. 지주 및 후면 결합부의 마감이 미려하게 처리되었는가?			
	서체 및 픽토그램	12. 판독성과 가독성이 우수한 서체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장평조정 및 변형을 하지 않았는가?			
		13. 픽토그램 사용시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했는가?			
	조 명	14. 야간식별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조명이나 간접조명방식을 고려하였는가?			
		15. 내용전달을 위한 문자위주로 조명을 계획했는가?			
		16. 과도한 원색조명 및 움직임이 있는 연출조명이 없도록 하였는가?			
	사전협의 여부	17.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와 구체적 협의를 거쳤는가?			
	미반영 점검항목 및 사유 기재				
	디자인 담당부서 협의내용 기재				

표 4-3 공공시각매체 체크리스트

V. 옥외광고물

1. 개요
2. 민간건축물
3. [경관지구] 전통건축물

Part V. 옥외광고물

1. 개요

1.1 정의

□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시설에 표시되는 간판, 입간판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지칭한다.

1.2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의 정의에 따른 전주시 옥외광고물의 대상은 아래 표와 같이 2종으로 분류된다.

민간건축물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소형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창문이용간판, 연립이용간판
[경관, 경관지구] 전통건축물	전통건축물 부착 옥외광고물

표 5-1 옥외광고물 적용대상

1.3 가이드라인 체계

□ 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전주시의 옥외광고물 중 민간건축물과 경관지구의 전통건축물의 크게 2개 분류에 대한 규정항목을 다룬다.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규정항목은 공통, 형태 및 색채, 서체 및 픽토그램, 조명, 분류별 유의사항의 다섯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지침을 제공한다.

기본방향	가이드라인 분류	규정항목
품격 있고 통일감 있는 계획 추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 시민의 문화적 감성 이미지 조성 과도한 옥외광고물 설치 지양 옥외광고물 설치수량 최소화	민간건축물 [경관지구] 전통건축물	공통 형태 및 색채 서체 및 픽토그램 조명 분류별 유의사항

표 5-2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체계

Part V. 옥외광고물

2. 민간건축물

2.1 공통

01 옥외광고물의 설치수량은 최소화한다.

- 도로 1개소와 면하는 경우, 1업소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 도로 2개소 이상과 면하는 경우, 각각부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2개소 설치를 할 수 있으나 최소화를 권장한다.
- 주요도로가 전후면으로 접한 경우, 양면을 모두 전면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2개소 설치를 할 수 있다.

02 건축물 외관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의 사용 및 디자인을 추구한다.

- 건축물의 형태와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자체의 디자인 요소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재료와 디자인을 다룬다.
- 건축물의 외부 마감을 고려해 옥외광고물의 재료와 색채, 형식을 선정한다.

03 상호와 내용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 상호명과 업종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요 전달내용의 위계를 설정하여 적용한다.
- 음식이나 제품의 사진 및 조형물과 같은 디자인 요소의 사용을 지양한다.

04 건축물 계획시 과도한 옥외광고물 설치를 지양한다.

- 건축허가 및 경관·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통해 광고물의 설치위치와 수량, 방법, 설치예시 등을 사전 제시토록 하여 입주 후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한다.
- 옥외광고물 설치로 인해 건축물 입면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별도의 지주형식 등의 특화를 통해 예방하도록 한다.

05 경관지구의 옥외광고물은 제한을 통해 통일감을 형성한다.

- 한옥마을 등 경관지구의 옥외광고물은 지구별로 옥외광고물의 형태, 색채, 재료 사용범위, 부착방식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통일감을 형성한다.
- 지구 특성을 고려한 서체 등 표현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하여 통일감을 형성한다.

2.2 형태 및 색채

01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최대한 간결한 형태를 권장한다.

- 장식적 요소와 그래픽 요소를 최소화하고 단순한 디자인을 통해 건축물이 우선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 광고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를 권장한다.
- 동일 건축물 내에서 개별 옥외광고물의 크기 및 설치위치, 높이 등이 과도하게 차이나지 않도록 하여, 시각적 균형감과 질서를 추구한다.
- 옥외광고물 배색은 건축물 색상 및 업종 특성을 고려한다.

02 입체적 광고물을 통해 시각적 다양성이 있는 감성적 경관을 권장한다.

- 평면적인 광고물(플렉스 간판 등)에 의한 획일적 도시경관 형성을 지양한다.
- 텍스트와 로고 등의 입체 활용을 통해 시각적 다양성을 추구한다.

03 인접광고물과의 규격 및 비례, 형태, 색채 등의 조화를 통해 시각적 이질감을 최소화한다.

- 인접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과 유사한 크기 및 비율로 디자인한다.
- 가급적 저층부의 경우 옥외광고물의 하단 높이 또는 상단 높이 중 하나의 높이를 중심으로 정렬선을 맞추어,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이 연출되도록 한다.

04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 사용을 지양한다.

- 글씨 색채 구성시, 1간판 1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주조색은 건축물 색상 및 업종 특성을 고려하되, 동일계열 또는 유사계열 색채사용을 권장한다.
- 원색사용 면적은 최소화하고, 강조색채는 주목성이 필요한 곳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2.3 서체 및 픽토그램

01 판독성과 가독성을 고려한 서체를 사용하고 업체 및 업종 특성을 반영한다.

- 업체 및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서체를 선정하되, 가급적 2가지 이내의 서체를 사용하도록 한다.
- 한글과 영문 서체는 서체의 기본특성을 활용하고, 가급적 극심한 장평 왜곡이 없도록 한다.

02 문자는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되 영문병기를 권장한다.

- 한글표기 시 한글맞춤법 및 국어 로마자표기법과 외래어표기법에 맞추어 표시한다.
- 영문위주로 부득이하게 표기할 경우, 반드시 한글을 병기하여야 한다.
- 한글과 영문 병기시, 문자의 크기, 색채 등 위계를 나누어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03 누구나 인지가능하도록 직관적 픽토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 픽토그램은 직관적으로 업종과 정보가 인식 가능하도록 디자인한다.
- 공공적 사용이 강한 경우, 국제표준 픽토그램 또는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2.4 조명**01 과도한 원색 및 움직임이 연출되는 옥외광고 조명을 지양한다.**

- 옥외광고물 조도 및 조명표현 방식은 ‘인공조명에의한 빛공해방지법’ 기준을 참고하여 조도 및 휘도를 계획한다.
- 네온사인 등 원색계열의 조명설치는 지양한다.
- 점멸, 직접노출형 LED등, 움직임 및 색상변화가 연출되는 조명은 지양한다.

02 내용전달 위주로 계획하고 주변 옥외광고물 조명과 조화를 계획한다.

- 옥외광고물 전체 조명보다는 내용전달을 위한 문자위주로 조명을 계획한다.
- 문자의 직접적 조명노출 방식보다는 간접조명을 통한 표현방식을 권장한다.
- 인접한 옥외광고물 간의 조명색채와 밝기를 고려한 계획으로 통일성을 추구한다.

03 에너지 절감형 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 LED 및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조명기구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 ※ 단, LED 백색의 경우 도시의 이미지를 과도하게 차갑게 하는 주광색(4,500k 이상)보다는 부드러운 백색(4,000K)과 전구색 사용을 권장한다.
 - ※ 단, 점멸, 직접노출형 LED등 옥외광고물 설치시 지양한다.

2.5 분류별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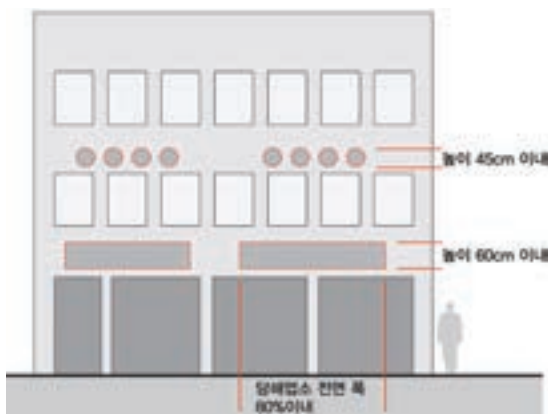
01 가로형 간판

가. 일반 가로형 간판

- 당해 업소 전면 폭 80% 이내, 최대 10m로 한다.
-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 추가설치가 가능하다.
- 판류형이나 입체형 간판 모두 가능하지만, 입체형 간판을 적극 권장한다.
- 곡각지점 설치시 가로형간판은 전면과 측면 두 곳에 설치가능하다.
- 주 표기요소는 판 면적의 1/2 이상 금지, 보조표기요소는 1/6 이하로 한다.
- 주 표기요소(1개)와 보조 표기요소 수(2개) 정도의 사용을 권장한다. (주 표기요소-상호 또는 브랜드명, 보조 표기요소-지점명,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
- 보조표기 요소로 마크심볼과 같은 조형이미지는 사용가능하나, 판류형 전체면적을 뒤덮는 실물사진은 금지한다.
- 점멸방식 사용을 금지한다.

나. 연립간판

- 당해 건물에 입점업소가 많아 가로형 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 벽면 또는 입구의 상단에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으로, 업소당 총수량에 포함된다.
- 건축주가 일정한 위치 규격으로 일괄 설치 후 관리하여 입점업소를 배정한다. 1업소당 면적 50cmX50cm 이내, 연립간판 전체의 면적은 300cmX300cm 이내로 한다.
※ 단, 규모와 형태에 따라 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건물의 출입구 상단에 설치할 경우 출입구 폭 초과를 금지한다.



▷ 일반 가로형 간판



▷ 연립간판

다. 건물상단 가로형간판

- 입체 문자형 간판만 가능하다.
- 건물주가 건물명으로 표시하거나 건물의 1/2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가 상호 또는 브랜드명을 표시할 수 있다.
※ 단, 업소가 표시할 경우 총수량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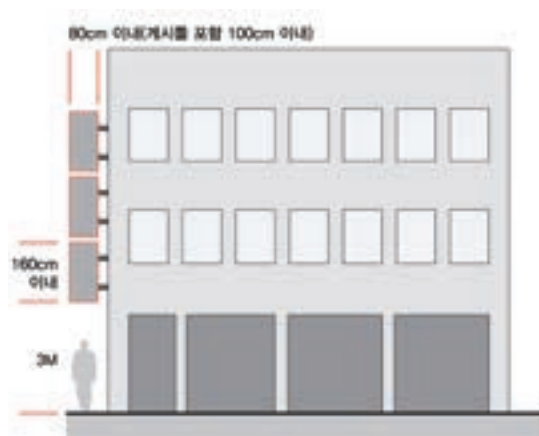
- 곡각지점에서는 ‘ㄱ’자 형태로 표시 가능하다.
- 구조체의 색상은 무채색이나 저채도 색상을 사용한다.
- 배경색은 한가지로 통일한다.
- 배경색이 무채색일 경우에는 표기부분을 업체 고유 CI색으로 표기 가능하고, 배경색이 유채색일 경우에는 각 업체의 색을 한가지로 통일해 사용한다.

02 돌출형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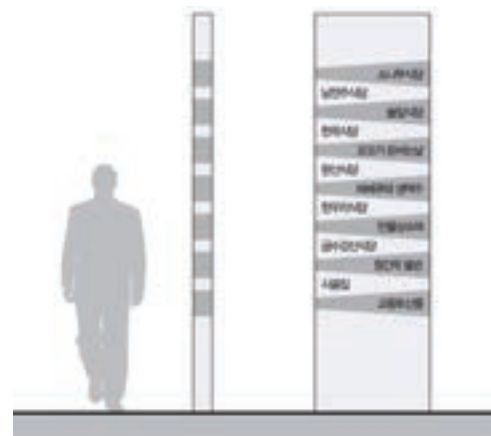
- 업소당 1개를 설치한다.
- 가로는 80cm 이하(게시틀 포함 100cm), 세로는 최대 160cm 이내, 두께는 30cm 이내로 한다.
- 표시범위는 5층 이하로 한다.
- 건물 전면 폭이 10m 이하 1줄, 10m 초과시 건물 양쪽 끝에 1줄씩 2줄 설치한다.
- 지상에서 3m 이상, 1개만 설치가능하다.
- 돌출간판이 3개 이상일 경우 연립으로 설치한다.
- 3층 이하는 가로형 간판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층별 돌출간판크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돌출간판은 광고물법에 따라 건물에 부착된 세로의 길이가 20m(상업지역은 30m)를 초과할 수 없다.
(한층의 높이를 약 3m로 계산하였을때 20m는 5~7층 정도의 높이)

03 지주형 간판

- 높이는 5m 이하(조형물 형태 포함)로 설치 가능하며, 면적은 1면 5㎡ 이하로 한다.
-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유지 경계선 1m 안쪽으로 표시한다.
- 연립의 경우 건물주가 설치하여 입점 업소에 배정하고 상호와 연락처만 표기한다.
- 연립의 배경색은 한가지로 통일한다.
- 연립의 배경색이 무채색일 경우에는 표기부분을 업체 고유 CI색으로 표기 가능하며, 배경색이 유채색일 경우에는 각 업체의 색을 한가지로 통일해 사용한다.



▷ 돌출형 간판



▷ 지주형 간판

04 창문 이용 광고물

- 창문을 이용한 광고성 홍보물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 단, 안전띠 개념으로 1층 창문 면적의 1/3 이하 표기는 허용한다.
- 옥외광고물 총 수량에는 미포함한다.
- 규격 및 층수 제한을 벗어난 경우, 실내에서 창문으로부터 10c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을 심의를 통해 허용한다.
- 입체형 점멸방식과 돌출입체 부착을 금지한다.
- 띠형식으로 직접 부착하는 경우, 영업 내용은 업종명이나 대표 취급 품목 1종만 표시 가능하다.
- 메뉴, 가격, 실물 사진 등 표기는 가급적 금지한다.

Part V. 옥외광고물

3. [경관지구] 전통건축물

3.1 공통

- 경관지구 전통건축물에서 옥외광고물의 모든 문자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은 금지한다.
- 경관지구 전통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색채에는 기와와 토담, 자연소재인 나무색채와 대비되어 자극되는 색채를 사용할 수 없다.
- 경관지구 전통건축물에서 가로형 간판 설치시 한옥의 처마구조를 최대한 가리지 않도록 한다.
- 어닝에는 높이 5cm 이내의 업소명 1개외 표기를 금지한다. (업소당 총 1개 표기만 허용)
- 경관지구 전통건축물의 현수막, X밴드 광고물 등 1회용 옥외광고물은 1업소당 1개로 제한한다.
- 경관지구 전통건축물의 1회용 옥외광고물은 원색을 사용할 수 없다.
 - ※ 단, 전체 면적의 1/10 이내에서 포인트컬러를 사용할 수 있다.

분 류		체크리스트 항목	사업 부서	시행 부서	디자인 부서
옥 외 광고물	공 통	1. 옥외광고물 각각의 설치규격을 준수하였는가?			
		2. 1업소 1간판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 추가설치 가능)			
		3. 인접한 건물 및 같은 층의 간판들과 높이정렬 등 연계성을 고려하였는가?			
		4. 상호와 내용이 쉽게 전달되도록 계획하고, 음식이나 제품사진 및 조형물 등 요소의 사용을 지양했는가?			
		5. 건축물 계획 자료에서 사인의 설치위치와 수량, 방법을 사전에 검토하여 조정 하였는가?			
		6. 한옥마을 등 경관지구의 경우, 기준을 준수하여 제한사항들이 적용되었는가?			
	형태 및 색채	7. 건축물이 우선 인식되도록 조화를 고려하고 최대한 간결한 형태를 권장했는가?			
		8. 플렉스 간판 등 평면적 광고물이 아닌 입체적 광고물로 감성적 경관을 권장 하였는가?			
		9. 원색사용 면적을 최소화하고, 주조색과 보조색 구성시 동일계열 또는 유사계열 색채를 사용했는가?			
	서체 및 픽토그램	10. 판독성과 가독성이 우수한 서체를 사용하고, 서체종류의 최소화를 권장했는가?			
		11. 한글표기를 우선하고 영문병기시 반드시 한글을 병기하였는가?			
		12. 픽토그램 사용시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했는가?			
	조 명	13. 네온사인 등 원색계열의 조명 설치나 직접노출형 LED조명 사용을 배제 또는 적극적으로 제거하였는가?			
		14. 내용전달을 위한 문자위주로 조명을 계획했는가?			
		15. 에너지 절감형 조명기구 활용을 고려하였는가?			
	사전협의 여부	16.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와 구체적 협의를 거쳤는가?			
	미반영 점검항목 및 사유 기재				
	디자인 담당부서 협의내용 기재				

표 5-3 옥외광고물 체크리스트

Part VI.

가이드라인 구성 및 운영

1.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 및 내용
2.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방향

Part VI. 가이드라인 구성 및 운영

1.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 및 내용

1.1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 및 내용

1) 전주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률의 실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 경관법에 따른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및 특정경관계획 실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 공공디자인진흥법에 따른 도시이미지 정체성, 지역브랜드, 장소정체성의 구축, 공공시설물의 통합 및 배치 연계, 공공시각매체 적용의 기획, 조사, 분석, 디자인, 설계, 제작, 시공의 방향 지침을 제공한다.

2) 전주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전주시 도시디자인이 지향해야 할 정성적 원칙을 제시한다.

- 구체적 수치 중심의 정량적 지침보다는 정성적이며 지향점 중심의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 협의관계에서 활용되도록 한다.

3) 전주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전주시의 도시디자인 관련 각종 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제시한다.

- 경관위원회 및 상징조형물 심의위원회 등 각종 심의위원회의 사전 검토기준을 제공한다.
- 도시디자인 관련 각종 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제공되며, 제출된 내용이 기준과 어긋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2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체계

1) 전주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구성요소는 공공건축물 / 공공공간 / 공공시설물 / 공공시각매체 / 옥외광고물로 분류하여 수립한다.

-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의 구성요소별 가이드라인 지침내용은 일반사항과 특화사항 또는 세부사항으로 구분한다.
- 일반사항은 보편적이며 공통적 기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 특화사항은 전주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을 중심으로 한다.
- 세부사항은 공공시설물처럼 개별 항목별 기준을 상세히 제시한다.

부 문	일 반	특화 또는 세부	
공공건축물	일반공공건축물	특 화	전통건축물 산업단지건축물
공공공간	보행공간 자전거도로 공원 및 광장	특 화	보행 가로녹지 조명 휴게 판매 위생 관리 정보 기타
공공시설물	공통	세 부	-
공공시각매체	일반 시각매체 영상정보 시각매체	-	-
옥외광고물	민간건축물	경관지구	공공건축물

표 6-1 가이드라인 구성체계

2) 구성요소별 기술 내용은 규정항목의 분류에 따라 수립한다.

- 공공건축물, 공공공간을 비롯해 모든 구성요소에 대해 야간경관계획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야간조명 또는 조명에 대한 지침의 성격을 갖는 내용을 기술한다.
- 각 요소별 특성에 따른 규정항목의 차별성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부 문	규정항목	
공공건축물	계획 및 입면 공간연계 및 외부공간 부속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공공공간	계획 시설물 야간조명	
공공시설물	계획 형태 및 구조 재질 및 색채	그래픽 및 조명 분류별 유의사항
공공시각매체	계획 형태 및 색채	서체 및 픽토그램 조명
옥외광고물	공통 형태 및 색채 서체 및 픽토그램	조명 분류별 유의사항

표 6-2 가이드라인 규정항목

Part VI. 가이드라인 구성 및 운영

2.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방향

2.1 사전협의 기준으로 활용

-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사업수행 후 시행되는 경관심의의 기준으로 필수적으로 적용한다.
- 부서별 수행되는 개별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도시이미지의 방향성을 사전 검토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 해당사업이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의 구성 요소 중 어느 요소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공통지침을 중심으로 계획 및 연계사항, 형태, 색채, 야간조명 등에 대한 기준 지침을 확인하도록 한다.
- 기준 지침을 사업 용역의 수행자 및 기업 등이 인지토록 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할 경우 사전에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한다.

2.2 사전자문 기준으로 활용

-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구성요소의 지침과 충돌이나 특화사항에 대한 추진 상의 문제요인이 있어 사전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가이드라인 지침 적용을 우선한다.
-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부득이하게 따르지 못할 경우 사전자문 단계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경관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따른다.

2.3 경관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

- 경관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는 심의시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부득이하게 따르지 못한 경우, 사전 자문 단계를 거치도록 하여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경관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한다.
- 특화사항은 경관 심의의 주요사항으로 다룬다.
- 특화사항은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침사항 외에 더욱 향상된 계획이나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경관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는 제안된 대안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다.
-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대상은 도시디자인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점검사항을 확인한다.

2.4 기획, 조사 및 분석, 계획, 디자인, 설계 등의 활용

- 공공디자인진흥법 등에 의해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도시이미지 정체성, 장소콘텐츠,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지역브랜드 구축 등의 사전기획, 조사 및 분석, 마스터플랜 수립, 디자인 등을 수행하고자 할 때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지침을 따른다.
- 관광진흥종합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축계획 수립시 등 각종 기획, 조사 및 분석, 계획 단계의 고려사항 검토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침을 활용한다.

부 문	관련계획 및 대상	적용시기	계획 및 지침의 활용	운 영
공 공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사업	계획시	- 도시이미지 정체성, 장소콘텐츠, 지역 브랜드 등에 대한 기획, 마스터플랜, 조사 및 분석, 자문 등 계획 수립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침 반영	-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의 협의 및 자문
	지구단위 계획	경관부문 계획시	- 경관계획에 따른 경관상세계획 수립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침 반영	- 경관위원회 심의시 도시디자인 가이드 라인 반영여부의 확인 및 특화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등 확인과 의결
	경관지구 계획	계획시	- 경관지구의 경관관련 신규, 수정사항 계획 적용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침 반영	- 경관위원회 심의시 도시디자인 가이드 라인 반영여부의 확인 및 특화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등 확인과 의결
	공공발주	계획 및 설계시, 구매설치 계 획시	-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검토 반영 -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제출	[심의대상] - 경관위원회 심의시 도시디자인 가이드 라인 반영여부의 확인 및 특화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등 확인과 의결 [심의제외대상] - 가이드라인의 적용여부에 대해 도시 디자인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민 간	대규모 개발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 경관계획에 따른 경관상세계획 수립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침 반영	- 경관위원회 심의시 도시디자인 가이드 라인 반영여부의 확인 및 특화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등 확인과 의결
	일반건축물 (주거, 상업, 업무 등)	건축계획 수립시	-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자가점검 (도시디자인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원칙과 지침) -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제출 - 경관지구의 공공건축 관련 신규, 수정 사항 계획 적용시 도시디자인 가이드 라인 지침 반영	[심의대상] - 경관위원회 심의시 도시디자인 가이드 라인 반영여부의 확인 및 특화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등 확인과 의결 [심의제외대상] - 가이드라인의 적용여부에 대해 도시 디자인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옥외광고물 심의시	- 경관가이드라인 자가점검 (경관가이드라인 원칙 및 지침) - 광고물 인허가 시 도시디자인 가이드 라인 체크리스트 제출 심의대상	[심의대상] - 옥외광고물 위원회 심의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여부 확인 [허가, 신고대상] - 가이드라인의 적용여부에 대해 도시 디자인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경관지구 시설물 설치시	- 경관지구의 공공시설물 및 공공시각 매체 등 관련 신규, 수정사항 계획 적용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침 반영	- 경관위원회 심의시 도시디자인 가이드 라인 반영여부의 확인 및 특화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등 확인과 의결

표 6-3 가이드라인 운영방향

Part VII.

보행공간 디자인 원칙 [부록]

1. 개요
2. 보도
3. 자전거 · 보행자 겸용 도로

Part VII. 보행공간 디자인 원칙 [부록]

1. 개요

1.1 목적

- 보행 및 자전거 이용자 등 다양한 도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도와 보행공간 시설물 등의 설계, 시공, 감리에 적용될 원칙 정립

1.2 기본방향

- 전주 시민과 전주시 방문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전주시의 보행공간 디자인, 시공 및 설치를 위해 다음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전주시 도시디자인 기본방향인 ‘시민중심’, ‘문화기반’, ‘생태지향’의 개념을 수용하여 보행공간 디자인 원칙을 설정한다.



그림 7-1 전주시 보행공간의 기본방향

1) 안전과 편의 (Safety & Amenity)

- 보행공간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 보행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 및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안전구역’을 확보하여 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이용자 등도 불편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보행, 휴식, 관련 시설 등의 이용을 용이하도록 한다.
- 보행자 이동의 최소공간을 우선 확보한다.
- 보도블록 간의 높이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등이 다니기 용이하도록 도로와 맞닿은 부분의 턱을 없애 도로 면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시공한다.

- 일정 간격으로 벤치 등의 휴게시설을 제공하여, 보행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 상점 등의 안내판, 적재물 등이 보행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보행의 '절대공간'을 확보한다.
- 눈, 비 등으로 인해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와 마감 방법을 적용한다.
- 보행공간 공사시 안전이동로와 안전펜스를 마련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이 연속되도록 설치한다.

2) 조화(Harmony)

- 보행공간의 보도와 시설물은 도시경관의 중요 요소로 주변 환경과 조화되어야 한다.
- 보행공간의 보도와 시설물은 전주시의 경관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요소를 최소화한다.
- 전주의 품격을 높이면서 전주만의 문화 정체성을 시각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 보도와 시설물간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보행공간의 시설물은 구조와 배치를 통합한다.
- 단위 공간의 보도공간에는 동일한 보도블록을 사용하여 시간적 통일성을 갖도록 한다.
- 가능한 최대한의 넓이를 가진 보도블록이나 석재를 사용한다.
- 안온하고 차분한 색채의 보도블록이나 석재를 사용하여 전주시의 품격을 유지한다.
- 시설물 고정장치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 보행공간에 수직지주는 통합하여 최소화한다.
- 단위공간의 보도공간 시설물은 동일한 디자인으로 통일한다.
- 전주시 주요 거점의 방향과 잔여거리 등을 보도공간 바닥에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보도공간의 맨홀커버 등 바닥 설치물과 보도블록 패턴이 조화되도록 한다.

3)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 보행공간이 장시간 유지될 수 있도록 디자인, 시공 한다.
- 전주시의 그린네트워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녹지공간과 연계한다.
-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 표준화된 보도블록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 교체, 수선이 용이하도록 한다.
- 보행공간 공사 시 설계자와 시공자 이름을 표기하여 책임시공을 유도한다.
- 보행공간의 띠녹지 화단 등의 녹지공간은 연속되도록 한다.

Part VII. 보행공간 디자인 원칙 [부록]

2. 보도

2.1 정의

- 사람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이다. 차도 등 다른 부분과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공작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 표시로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한 부분을 말한다.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건설교통부, 2011년)

2.2 기능

-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보장하는 구조 및 시설로 되어야 한다.
-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을 유지하고, 산책, 공원 연결 도로 등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에는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3 횡단구성

1) 세부원칙

- 보도의 일정 폭을 보행안전구역으로 조성한다.
- 보도는 보행안전구역과 장애물 구역으로 구분한다.
- 보도의 공간구성은 차도-(자전거전용도로)-장애물구역-보행안전구역-건축물 순을 원칙으로 한다.
- 벤치, 공중전화, 가로판매대, 분전함, 화단, 가로수 등 가로 상의 모든 시설물은 장애물 구역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 횡단경사 2% 이내를 준수한다.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4%까지 설치 가능하다.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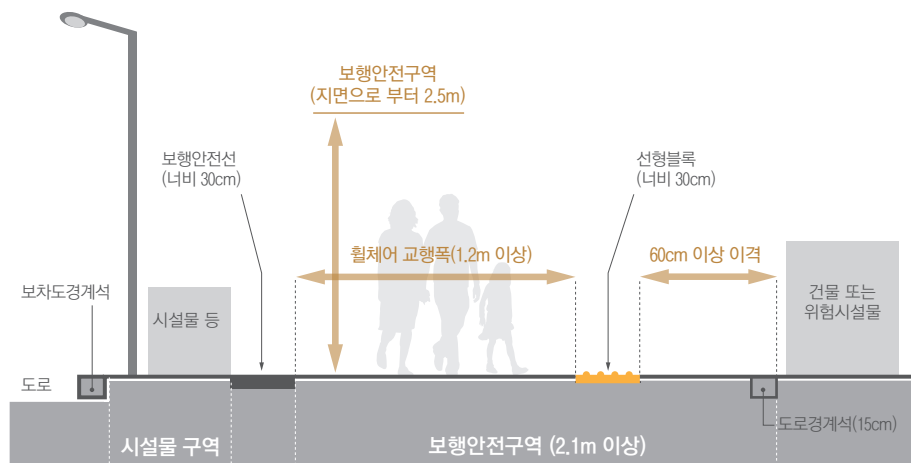


그림 7-2 보행공간의 횡단구성

2) 보행안전구역

-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정 폭을 ‘보행안전구역’으로 설정한다.
- 보행안전구역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기준이 될 수 있는 보행기준선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보도 유효 폭은 보도 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영역을 제외한 폭으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으로 정의된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보도의 최소 폭을 1.5m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도의 최소 유효 폭은 2.0m를 확보하도록 한다.
-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건설교통부, 2011년)
- 보도의 유효 폭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계부의 띠는 30cm 이상의 너비로 구성한다.
- 보도 상 녹지는 반드시 장애물 구역내에 통합 설치하고, 경계석은 포장면과 단차가 없도록 한다.
- 너비 3m 미만의 좁은 보도의 경우 장애물 구역과 보행안전구역 간의 포장재질의 변화로 보행기준선을 대신한다.
- 위와 같은 보행기준선이 없거나 단절되는 곳은 선형블록을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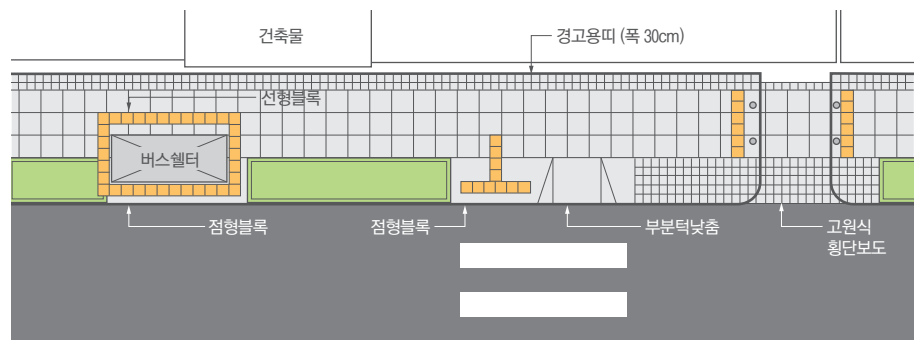


그림 7-3 보도의 평면구조

3) 기능별 설계안 (2025년 전주시기본계획)

가. 폭원 8m 이면도로

- 한번 주차 양방통행, 보차혼용 양방통행, 보차구분 양방통행, 한번주차 · 보행 일방통행, 양변주차 일방통행

나. 폭원 10m 이면도로

- 보차분리 양방통행, 보차혼용 양방통행(양변주차), 보차분리 양방통행(한번주차), 보차구분 일방통행(사각주차), 보차구분 일방통행(양변주차)

다. 폭원 12m 이면도로

- 보차분리 양방통행, 홀수차로 운영형태, 한번주차 보차분리 양방통행, 양변주차 보차분리 일방통행

라. 폭원 15m 이면도로

- 폭원이 15m 이상이 되는 도로는 가급적 홀수차로 계획한다.

구 분		중앙선 능률차로	중앙차로	연석차로	자전거 도로	보도	총 차로수
중로	15m 도로	3.0	-	3.5	-	2.5 X 2	3
		0.5	3.25	3.5	-	3.0 X 2	4
대로	20m 도로	3.0	3.25	3.5	2.0 X 2	2.25 X 2	5
		3.0	3.25	3.5	2.0 X 2	2.0 X 2	7
		3.0	3.25	3.5	2.0 X 2	4.0 X 2	7
광로	25m 도로	3.0	3.25	3.5	2.0 X 2	4.0 X 2	9
		0.5	3.25	3.5	2.0 X 2	4.0 X 2	10

표 7-1 도로정비시 차로계획

2.4 보도의 포장

1) 세부원칙

- 보행안전구역 내의 마감은 패턴, 질감을 통일하여야 한다.
- 보행안전구역은 평탄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한다.
- 보행안전구역의 포장마감재 간 이음새(줄눈)를 좁혀 보행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장애물 구역은 보행안전구역과 밝기 및 질감이 대비되도록 하며, 투수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맨홀로 인한 보행 상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맨홀 덮개를 보도포장과 연속성 있는 형태로 마감한다.
- 저시력자의 시지각적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구역 내에는 과도한 색채 변화 및 패턴 적용을 지양한다.

2) 보도의 재질

- 보도포장 재료는 기능, 안전성, 도시경관 측면에서 보도에 요구되는 성능과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전주시 도로경관 특성에 적합하고 시공과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경제적이야 한다.
- 보도포장의 재질은 불투수성과 투수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존의 불투수포장 (아스팔트, 화강판석 등)으로 인한 도시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친환경 투수 블록 포장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보행자, 자전거, 관리용 차량 등의 교통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특히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끄럼 저항성을 갖추어야 한다.
- 천연석을 사용하는 경우, ‘잔다듬’ 가공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 천연석의 경우, 색상, 명도, 채도 중에서 명도를 우선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2.5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안전시설

1) 세부원칙

-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이 있는 곳은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 횡단보도 및 보도의 시종점부, 대중교통 승하차 지점과 같이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은 차도와 보도의 경계부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지면으로부터 2m 이내의 공간에 돌출물이 있거나 지팡이 등으로 사전에 감지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계단이나 급격한 경사와 같이 지형변화가 있는 경우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점형블록 설치 시 경계석을 포함하여 위험요소로부터 30cm 이상 이격 되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 점형블록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원칙을 따르며, 세부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 국토해양부」 등의 규정을 따른다.
- 점형블록은 색상은 황색계열을 권장하며, 도시경관을 위해 황색계열 색을 사용하지 않을시 보도블록의 채도를 달리하도록 한다.
- 점형블록은 미끄럼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점형블록의 종류와 재질

- 점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의 두 종류가 있다.

가. 점형블록

- 기능 :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의 보행동선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 규격 : 30cm×30cm의 사각 판에 36개의 돌출된 원뿔 절단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점의 크기는 지름 3.5cm, 높이는 0.6±0.1cm 정도가 적당하며, 점의 간격은 1.5cm로 한다.

나. 선형블록

- 기능 : 방향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한다.
- 규격 : 30cm×30cm의 사각 판에 36개의 돌출된 원뿔 절단형 직선이 네 줄로 구성되어야 한다.
- 돌출선의 폭은 점형블록의 돌출점과 같은 크기인 3.5cm가 되어야 하며, 높이는 0.5±0.1cm 이어야 한다.

다. 재질

- ▣ 고강도 콘크리트 등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점형블록의 돌출부와 하부가 일체형인 제품을 사용한다.
- ▣ 시외에는 고무소재, 합성수지 등 내구성, 내열성, 내마모성이 떨어지는 제품 사용을 금지한다.
- ▣ 비나 눈 등의 물기에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철재 사용을 금한다.

3) 점형블록의 설치

- ▣ 점형블록을 연이어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규격,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 ▣ 점형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 ▣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 ▣ 점형블록 시·종점 부근의 선형블록은 보행자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평행 연장선상으로 유도해야 한다.

Part VII. 보행공간 디자인 원칙 [부록]

3. 자전거 · 보행자 겸용 도로

3.1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의 정의

- 자전거 이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 설치된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건설교통부, 2011년)

3.2 설치장소

- 자전거 교통량이 적은 구간에서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 자전거 교통량이 500~700대/일 이상이면 별도의 자전거도로와 보도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사이의 충돌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는 기본적으로 보행자를 중심으로 제반시설을 계획하고 설치한다.
- 자전거 통해 부분이 차도 쪽에 인접하도록 배치하며, 자전거가 차도로 전도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필요시 방호울타리 등 별도의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3 횡단구성

-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필요 보도 폭을 우선 산정하고, 자전거의 통행에 필요한 최소 폭 1.1m(연장 100m 미만의 교량 및 터널 구간에서의 최소 폭은 0.9m)를 더하여 결정한다.
- 일반도로 구간에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의 폭은 보도의 최소 폭 2.0m와 자전거 도로의 최소 폭 1.1m를 더하여 최소 3.1m 이상으로 한다.
- 주변지역 여건, 지장물 등으로 유효 보도 폭을 1.5m로 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의 폭을 최소 2.6m로 한다.
-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노면 표시 등을 이용하여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로를 구분한다.

Part VIII.

색채 가이드라인 [부록]

1. 색채의 이해
2. 전주시 도시디자인 색채 가이드라인

Part VIII. 색채 가이드라인 [부록]

1. 색채의 이해

1.1 색상

- 색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을 나타낸다.
- 10가지의 기본색을 빨강(Red), 주황(Yellow Red), 노랑(Yellow), 연두(Green Yellow), 초록(Green), 청록(Blue Green), 파랑(Blue), 남색(Purple Blue), 보라(Purple), 분홍(Red Purple)의 머리 글자를 따서 알파벳 R, YR, Y, GY, G, BG, B, PB, P, RP로 표시한다. 그리고 그 정도를 나타내는 0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조합해 10R이나 5Y와 같이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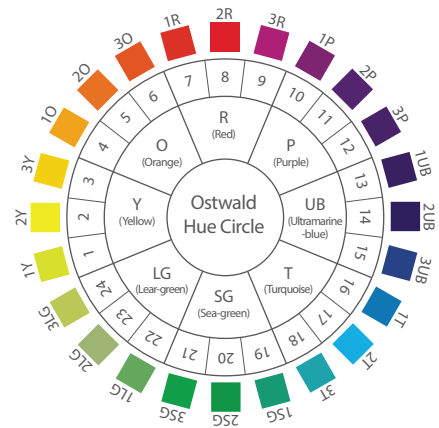


그림 8-1 색상

1.2 명도

- 색의 밝기를 나타낸다. 아주 어두운 0에서 매우 밝은 10까지의 수치로 나타낸다.

1.3 채도

- 색의 선명도를 나타낸다. 아주 탁한 0에서 매우 선명한 14까지의 수치로 나타낸다.
- 예를 들어 흰색, 검은색, 회색과 같은 무채색은 채도가 0이다. 반대로 아주 선명한 원색 빨강의 채도는 14이고, 청록이나 파랑의 채도는 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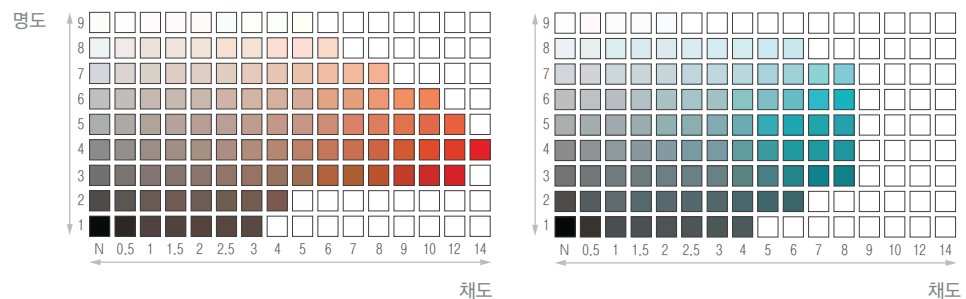


그림 8-2 명도 / 채도

1.4 먼셀표색계

- 빨강, 파랑, 노랑 등의 색명으로 색을 말하면, 개인차가 있어 객관적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적 표준으로 ‘먼셀표색계’라는 색을 표시하는 규칙을 사용한다.
- 먼셀표색계 형식은 KS표준규격이기도 하다.
- 먼셀표색계는 하나의 색채를 색상(색종류), 명도(밝기), 채도(선명도)를 결합해 표시한다.
- 예를 들어 은행나무잎은 봄부터 여름까지는 초록빛을 띠는데 이를 먼셀표색계로 표현하면 10GY 5/6(색상 10GY, 명도5, 채도6) 정도이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 노란빛을 띠어 5Y 7/8(색상 5Y, 명도7, 채도8)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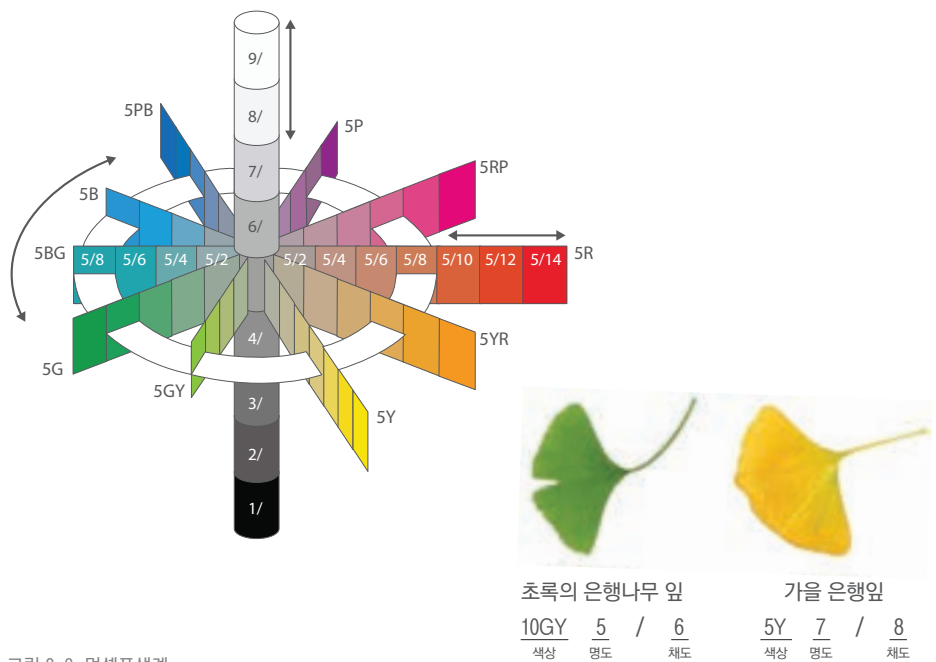


그림 8-3 먼셀표색계

Part VIII. 색채 가이드라인 [부록]

2. 전주시 도시디자인 색채 가이드라인

2.1 전주시 도시 색채 현황

- 전주시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색채는 대체로 붉은색(R), 붉은노란색(YR), 노란색(Y)의 3가지 색상에 속해 있어, 약간 따뜻함이 느껴지는 경관이 형성되어 있으며, 국내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다소 노란색의 기운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 전주시 색채 문제의 대다수는 건축물, 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색채가 주위 경관에 비해 지나치게 채도가 높은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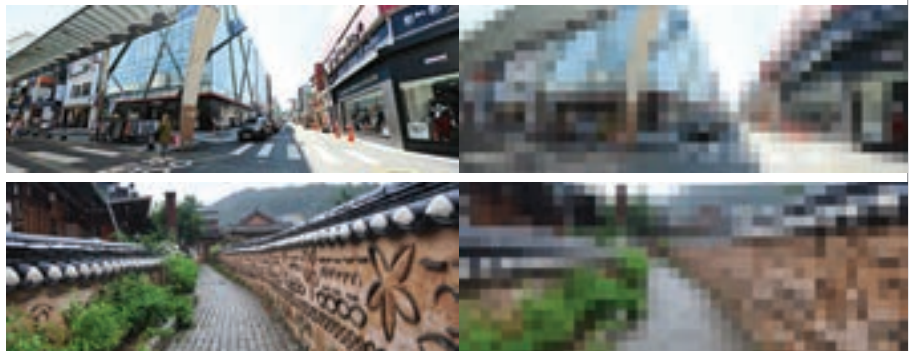


사진 8-1 전주시 도시 색채 현황

2.2 건축물 색채

- 건축물의 외벽 기본색은 저채도의 색채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 저채도로 구성된 부드러운 색조의 건축물에서는 차분함과 품격이 느껴지고, 겨울이나 여름 등 사계절의 변화와도 잘 어우러진다.
- 지붕의 색채는 하늘의 색채가 보다 선명하게 느껴지도록 채도를 낮춘 색채를 사용한다.

2.3 시설물 색채

- 전주시 시설물의 색채는 모두 저채도를 적용한다.
- 전주시 공공시설물 기본색채는 ‘도료용 표준색 견본 2008년 G판/ 한국페인트잉크 공업 협동 조합 G-303501, G-315002, G-324501’로 지주통합시설은 반드시 기본 색채를 사용한다.
- 공공시설물 색채는 건축물 색채와 동일하게 차분한 저채도를 사용한다.
- 시공시 반드시 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한다.

2.4 옥외광고물 색채

- 전주시 옥외광고물의 색채는 가능한 범위에서 저채도 적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 및 시설물 색채보다 채도가 높은 색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차분한 색채를 기본으로 한다. 특히, 배경면의 색채는 지정된 범위 내에서 계획 및 시공토록 권장한다.



그림 8-4 도시디자인 색채 범위

건축물/시설물 색채범위

옥외광고를 권장 색채범위

참여연구진

전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

연구진 (주)헤드어반
이호준 대표
유재홍 팀장
손정순 팀장
김범규 대리
이상호 대리

자문 강성중 교수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 전공
최성호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공간디자인 전공